

호성티앤씨 주식회사

2022 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CREATIVITY
INSPIRED
HYOSUNG

HYOSUNG TNC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지배구조 관련 현황에 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현황은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기재하였습니다.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활동내역의 경우 공시대상기간(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가이드라인에서 별도 기간을 제시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내역을 기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목 차

| | |
|---|----|
| I. 개요 | 1 |
| II. 기업지배구조 정책 | 2 |
| III. 주주 | 4 |
| 1. 주주의 권리 | 4 |
|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 12 |
| IV. 이사회 | 25 |
| 1. 이사회 기능 | 25 |
| 2. 이사회 구성 | 31 |
| 3. 사외이사의 책임 | 42 |
| 4.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 46 |
| 5. 이사회 운영 | 47 |
| 6. 이사회 내 위원회 | 53 |
| V. 감사기구 | 62 |
| 1. 내부감사기구 | 62 |
| 2. 외부감사인 | 72 |
| VI. 기타 주요 사항 | 78 |
| <별첨>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및 관련 내부 규정 | 80 |

I 개요

(1) 기업명 : 효성티앤씨 주식회사

(2) 작성 담당자 : (정) 성명 : 박숙미 직급 : PM 부서 : 자금팀
 전화번호 : 02-707-7814 이메일 : sukmi0107@hyosung.com
 (부) 성명 : 김병준 직급 : Pro 부서 : 자금팀
 전화번호 : 02-707-7436 이메일 : kbj10004ok@hyosung.com

(3) 작성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4) 기업 개요^{주1)}

| | | | |
|---------------------------------|-------------|--------------------------------|-----------------------|
| 최대주주등 | (주)효성 외 12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44.68% ^{주2)} |
| | | 소액주주 지분율 | 45.24% ^{주2)} |
| 업종(금융/비금융) | 비금융 | 주요 제품 | 스판덱스, 나이론, 폴리에스터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여부 (해당/미해당) | 해당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해당/미해당) | 미해당 |
| 기업집단명 | 효성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억원) | | | |
|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연결 매출액 | 88,827 | 85,960 | 51,616 |
| 연결 영업이익 | 1,236 | 14,237 | 2,666 |
| 연결 계속사업이익 | 192 | 10,079 | 1,683 |
| 연결 당기순이익 | 192 | 10,079 | 1,683 |
| 연결 자산총액 | 43,199 | 45,265 | 28,241 |
| 별도 자산총액 | 16,776 | 16,139 | 12,352 |

주1) 최근 공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작성

주2) 소수점 2자리까지 표기(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1) 기업지배구조 정책 현황

당사는 2018년 6월 1일을 분할기일로 주식회사 효성이 영위하는 사업 중 섬유/무역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신설되었습니다. "최고의 기술과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인류의 보다 나은 생활을 선도한다"는 Hyosung Way의 가치체계에 따라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는 글로벌 일류 기업을 추구하고 있으며, 기업 경영의 근간이 되는 지배구조를 당사의 원칙과 정책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배구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 작성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이사 선임 시, 사내이사는 이사회에서 적합한 후보를 추천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별도 결의과정을 통해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가 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표위원 또한 사외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사 선임 시, 이사 후보자에 관한 정보는 주주총회에 앞서 공시되는 참고서류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통해 주주에게 충실히 제공되고 있으며, 이사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경영 기본 방침과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 직무 집행을 감독하는 경영 기관으로, 독립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당사는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가 50% 이상이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사항은 정관 제31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심의·의결되고 있으며, 이사회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이사회가 전략적 판단을 하기 위해 각 이사의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내 최고 전문가가 사업을 총괄하고 이사회에 참여해 대표이사를 맡게 함으로써 책임 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 또한 필요합니다. 이에 당사의 사외이사는 재무, 회계, 법률, 의료 부문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시각으로 이사회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함으로써, 객관적·독립적으로 경영을 감독하고 조언도 하고 있습니다.

당사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

(http://www.hyosungtn.com/kr/ir/the_board_of_directors.do) 및 사업보고서(<http://dart.fss.or.kr>) 등을 통해 상세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2) 지배구조의 특징

가.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을 통한 투명성 강화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투명성 및 독립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율을 50% 이상(보고서 제출일 현재 50%)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다각적인 관점을 고려한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추는 동시에 독립성이 검증된 다수의 사외이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외이사는 경영진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며, 이사와 회사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상법과 이사회운영규정 등에 근거하여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사회 내 위원회 중 감사위원회는 구성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를 과반수 이상으로 운영하고 사외이사를 대표위원으로 선임하여 독립성과 투명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나. 위원회 중심의 이사회 운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

당사는 이사회 내 총 3개의 위원회(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나, 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회사 경영방침과 투자 등에 관한 사항 및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다. 다양한 배경의 사외이사 선임을 통한 이사회 전문성 강화

당사는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사진이 특정 배경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변할 수 있도록 금융·경제·재무·회계·법률·의료 등 여러 전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외이사 중 금융·회계·재무분야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업무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주주의 권리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원칙 1-①)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가.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18년 6월 1일 (주)효성에서 인적분할되어 신규 설립된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5회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동 기간 중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은 없습니다.

주주총회 개최 시, 상법에서는 주주총회 2주전까지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당사는 법령에 따라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개최되었던 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총회 개최현황 및 세부사항]

| 구 분 | 2023년 제5기 정기주주총회 | 2022년 제4기 정기주주총회 | 2021년 제3기 정기주주총회 |
|---------------------|---------------------|---------------------|---------------------|
| 소집결의일 | 2023년 2월 23일 | 2022년 2월 23일 | 2021년 2월 24일 |
| 소집공고일 | 2023년 2월 23일 | 2022년 2월 24일 | 2021년 2월 24일 |
| 주주총회개최일 | 2023년 3월 16일(목) | 2022년 3월 17일(목) | 2021년 3월 18일(목)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주총 21일 전 | 주총 21일 전 | 주총 22일 전 |
| 개최장소/지역 | 본사/서울 마포구 | 본사/서울 마포구 | 본사/서울 마포구 |

| 구 분 | | 2023년 제5기 정기주주총회 | 2022년 제4기 정기주주총회 | 2021년 제3기 정기주주총회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 1% 이상 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1% 이상 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1% 이상 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 외국인 주주가 이해 가능한 수준의 소집통지 여부 및 방법 | | - | - | - |
| 세부 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여부 | 6명 중 2명 출석 | 5명 중 2명 출석 | 6명 중 2명 출석 |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여부 | 3명 중 1명 출석 | 3명 중 1명 출석 | 3명 중 1명 출석 |
| | 주주 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 주주 : 4인 (개인주주 4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의견 발언 | 1) 발언 주주 : 4인 (개인주주 4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의견 발언 | 1) 발언 주주 : 4인 (개인주주 4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의견 발언 |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주주들에게 제공된 정보는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 목적사항 등이며 회의 목적사항은 보고사항(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과 부의사항(재무제표 승인, 이사선임, 감사위원 선임, 정관변경, 이사보수한도 승인 등)이었습니다.

또한 소집공고 서류에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이사회 출석을 및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의 활동내역 포함)과 사외이사 보수현황을 기재하고 있으며,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에 대한 사항으로서 단일거래규모가 자산 또는 매출액의 1% 이상인 거래 및 해당 사업연도 중 거래총액이 자산 또는 매출액의 5% 이상인 거래내역도 기재하고 있습니다.

나. 주주총회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 제공하기 위해 조치한 사항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사외이사 보수현황,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뿐만 아니라 업계의 현황과 회사의 현황, 시장점유율 등도 기재하는 등 주주총회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4에서는 주총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주주총회 개최일 2주 전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당사는 법적 기한을 준수함과 동시에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개최일 약 3주전 소집결의를 하고, 최소 21일에서 최대 22일 전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 참고서류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 일정 등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결산 및 이사회 일정 등 회사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는 있으나, 업무 프로세스 정비 등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궁극적으로는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주주총회 4주 전 소집 통지 및 공고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원칙 1-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최대한의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관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기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당사의 주주총회에 대한 주주들의 관심 및 참석률을 고취시켜 왔습니다. 또한,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52조에 의거하여, 주주들의 용이한 의결권 행사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권유자인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 시 필요 정보가 정확히 제공되도록 권유절차·방법 등을 규정하고, 권유문서 등의 내용을 권유 행위 2영업일 전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 3월 18일에 개최되었던 제3기 정기주주총회는 참석률 71.1%, 2022년 3월 17일 개최되었던 제4기 정기주주총회는 참석률 67.6%, 2023년 3월 16일 개최되었던 제5기 정기주주총회는 참석률 60.2%를 기록하였습니다.

나.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조치한 사항

당사는 의결정족수 확보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위해 2021년 3월 18일 제3기 정기주주총회 및 2022년 3월 17일 제4기 정기주주총회, 2023년 3월 16일 제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시 사전에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총 집중일이 아닌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여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 등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 등에 의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향후에도 회사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는 있으나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주주총회 집중 예상일을 피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주주의 권리 보장을 적극 검토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비점 등을 개선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주주총회 분산개최 여부, 서면/전자투표 실시여부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여부]

| 구 분 | 2023년 제5기 정기주주총회 | 2022년 제4기 정기주주총회 | 2021년 제3기 정기주주총회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3년 3월 24일, 3월 30일, 3월 31일 | 2022년 3월 25일, 3월 30일, 3월 31일 | 2021년 3월 26일, 3월 30일, 3월 31일 |
| 정기주주총회일 | 2023년 3월 16일(목) | 2022년 3월 17일(목) | 2021년 3월 18일(목)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여부 | 예 | 예 | 예 |
| 서면투표 실시여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 전자투표 실시여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여부 | 예 | 예 | 예 |

[제5기 정기주주총회 안건별 찬반 내역]

(단위 : 주)

| 정기 | | 제5기 정기주주총회 | | | 2023.03.16 | |
|--------|-------|--|-------|------------------|--------------------|---------------------------|
| 안건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①) | ①중 의결권행사 주식수(A) 1) | 찬성 주식수 (B) (비율, %) 2) |
| | | | | | | 반대·기권 등 주식수(C) (비율, %) 3) |
| 제1호 의안 | 보통 | 제5기 ('22. 1. 1 ~ '22. 12. 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4,315,690 | 2,597,422 | 2,540,467 (97.81%) |
| | | | | | | 56,955 (2.19%) |
| 제2호 의안 | 특별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 | 4,315,690 | 2,597,422 | 2,287,615 (88.07%) |
| | | | | | | 309,807 (11.93%) |
| 제3호 의안 | 보통 | 배인한 사내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4,315,690 | 2,597,422 | 2,590,863 (99.75%) |
| | | | | | | 6,559 (0.25%) |
| 제4호 의안 | 보통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4,315,690 | 2,597,422 | 2,246,268 (86.48%) |
| | | | | | | 351,154 (13.52%) |

1) 주식수(A) = 주식수(B) + 주식수(C)

2) 찬성 주식수 비율(%) = (B/A) × 100

3) 반대·기권 등 주식수 비율(%) = (C/A) × 100

[제4기 정기주주총회 안건별 찬반 내역]

(단위 : 주)

| 정기 | | 제4기 정기주주총회 | | | 2022.03.17 | | |
|-----------|---------|--|--------------------------------|--------------------------------|-------------------------------|---|--|
| 안건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①) ¹⁾ | ①중 의결권행사 주식수(A) ²⁾ | 찬성 주식수 (B) (비율, %) ³⁾ | |
| | | | | | | 반대·기권 등 주식수(C) (비율, %) ⁴⁾ | |
| 제1호 의안 | 보통 | 제4기 (21. 1. 1 ~ '21. 12. 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4,315,690 | 2,918,088 | 2,732,042 (93.62%) 186,046 (6.38%) | |
| 제2호 의안 | 제2-1-1호 | 보통 | 조현준 사내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4,315,690 | 2,918,088 | 1,956,938 (67.06%) 961,150 (32.94%) |
| | 제2-1-2호 | 보통 | 김치형 사내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4,315,690 | 2,918,088 | 2,893,934 (99.17%) 24,154 (0.83%) |
| | 제2-2-1호 | 보통 | 오병희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4,315,690 | 2,918,088 | 2,654,712 (90.97%) 263,376 (9.03%) |
| | 제2-2-2호 | 보통 | 최병덕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4,315,690 | 2,918,088 | 2,729,391 (93.53%) 188,697 (6.47%) |
| 제3호 의안 | 제3-1호 | 보통 | 조인강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2,623,758 | 1,226,156 | 1,092,575 (89.11%) 133,581 (10.89%) |
| 제4호 의안 | 제4-1호 | 보통 | 오병희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2,623,758 | 1,226,156 | 971,443 (79.23%) 254,713 (20.77%) |
| | 제4-2호 | 보통 | 최병덕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2,623,758 | 1,226,156 | 1,031,684 (84.14%) 194,472 (15.86%) |
| 제5호 의안 | 보통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4,315,690 | 2,918,088 | 1,986,967 (68.09%) 931,121 (31.91%) | |

1)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은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수를 제외한
주식수 기재

2) 주식수(A) = 주식수(B) + 주식수(C)

3) 찬성 주식수 비율(%) = (B/A) × 100

4) 반대·기권 등 주식수 비율(%) = (C/A) × 100

(세부원칙 1-③)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주주제안권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의 주주는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에 따라 직전연도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금년도 일자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 선임 등의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당사에 제안할 수 있으며, 당사는 동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 주주제안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

당사는 여러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주제안권에 대한 법령상 절차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내부 기준 및 절차 수립 등을 검토하여 주주 권리 보호와 당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 개최된 당사 주주총회 관련 주주제안은 없었습니다.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상황]

| 제안 일자 | 제안 주체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

(세부원칙 1-④)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이를 주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가.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추구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과 관련하여 당사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투자 규모와 경영실적, Cash Flow 상황,

재무구조, 시가배당률, 동종업계 내 타 회사들과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실시 여부 및 배당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분할 이후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총회 약 3주 전 이사회 배당 결정 당일에 '현금·현물 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배당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사전 안내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정이 확정되는 즉시 주주 대상으로 배당통지서 서면 발송을 통해 배당 계획 및 실시 사항을 신속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나. 주주환원정책의 수립 등 관련 정보 안내에 관한 사항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현금·현물 배당 결정 공시' 등을 통해 배당 실시 계획 등 배당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이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아 주주들에게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관련 부분을 보완을 통해 배당 관련 정보를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원칙 1-⑤)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가.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는 분할(2018년 6월 1일) 이후 현재(2023년 5월 31일)까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하였으며, 동 기간 중 차등배당·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을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사업연도별 구체적인 배당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연도별 배당 내역]

(단위 : 주, 원, %)

| 사업 연도 | 결산월 | 주식 종류 | 주식 배당 | 현금배당 | | | | |
|-------|-----|-------|-------|-----------------------|-----------------|-----------------------|---------------------|-------|
| | | | | 주당 배당금 ^{주1)} | 총 배당금 | 시가 배당률 ^{주2)} | 배당성향 ^{주3)} | |
| | | | | | | | 연결 기준 | 개별 기준 |
| 2022년 | 12 | 보통주 | - | 10,000 | 43,156,900,000 | 2.74 | 372.33 | 14.90 |
| | | 종류주 | - | - | - | - | - | - |
| 2021년 | 12 | 보통주 | - | 50,000 | 215,784,500,000 | 9.26 | 28.01 | 78.19 |
| | | 종류주 | - | - | - | - | - | - |
| 2020년 | 12 | 보통주 | - | 5,000 | 21,578,450,000 | 2.50 | 15.77 | 34.61 |
| | | 종류주 | - | - | - | - | - | - |

- 주 1) 1 주당 연도별 지급액 총액 (단, 최근 3 개 사업연도 중 분기·중간 배당은 실시하지 않음)
- 주 2) 주주명부 폐쇄일 2 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 주일간의 거래소 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에 대한 1 주당 배당금의 비율
- 주 3) 배당금총액/연결 당기순이익(지배기업소유주 지분 기준) 또는 개별 당기순이익 x 100

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한 조치사항

당사는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신증설 투자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차입금 감축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5년 연속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차별화된 기술력과 VOC를 바탕으로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투자도 병행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통해 기업 및 주주가치를 모두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당사는 주주친화정책 강화를 위해 연간 1회로 집중된 결산 배당을 분산시켜 배당금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고 주주들의 실질 배당수익률을 제고하고자, 정관상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간 배당은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할 수 있고, 그 결의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하되, 45일 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간배당에 대한 계획은 없으나, 추후 주주 요청이 있는 경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핵심원칙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 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세부원칙 2-①)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관한 사항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1주의 금액 : 5,000원)이며, 현재 당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의 총 발행주식수는 4,327,682주 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주식발행 현황]

| 구 분 | 발행가능주식수 ^{주1)} | 발행주식수 ^{주2)} | 발행비율 ^{주3)} | 비 고 |
|-------|------------------------|----------------------|---------------------|-----------------|
| 보 통 주 | 150,000,000 | 4,327,682 | 2.89% | 자기주식 11,992주 보유 |
| 종 류 주 | 50,000,000 | - | | - |

주 1) 기준일 현재 수권주식수(정관상의 주식수)

주 2) 기준일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기준일 현재까지 감소(감자, 이익소각 등)한 주식의 총수

주 3) 발행주식수/발행가능주식수 * 100(소수점 3 자리에서 반올림)

나.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고 있는지 여부

당사는 별도의 종류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모든 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1주 1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주주와의 의사소통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는 매년 3월, 5월, 8월, 11월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 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실적 발표를 하고 있으며,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별도의 IR팀은 없으나 (주)효성 IR팀과 협업하여 국내·아시아 지역 기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NDR(Non-Deal Road show)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사가 개최하는 컨퍼런스 참가 및 방문 투자자 미팅, 컨퍼런스콜, 야드 투어 개최 등 적극적인 IR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주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 내용에 대한 소개 및 경영실적 발표를 통해 회사에 대한 주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 진행된 주주와의 의사 소통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IR, 컨퍼런스콜, 소액주주 등 일부 주주와의 대화 개최 내역]

| 일 자 | 대 상 | 형 식 | 주요 내용 | 비고 |
|------------------|----------|-----|--------------------------|--------------------|
| 2022.02.07~02.08 | 국내 기관투자자 | IR | 2021년 연간 경영실적 및 2022년 전망 | NDR |
| 2022.03.24 | 해외 기관투자자 | IR | 2021년 연간 경영실적 및 2022년 전망 | Credit Suisse 컨퍼런스 |
| 2022.05.02~05.03 | 국내 기관투자자 | IR | 2022년 1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전망 | NDR |
| 2022.08.02~08.05 | 국내 기관투자자 | IR | 2022년 2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전망 | NDR |
| 2022.10.31~11.01 | 국내 기관투자자 | IR | 2022년 3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전망 | NDR |
| 2022.11.14 | 해외 기관투자자 | IR | 2022년 3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전망 | UBS 컨퍼런스 |
| 2022.11.25 | 국내 기관투자자 | IR | 2022년 3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전망 | 신한투자증권 컨퍼런스 |
| 2023.02.01~02.08 | 국내 기관투자자 | IR | 2022년 연간 경영실적 및 2023년 전망 | NDR |
| 2023.02.20~02.21 | 국내 기관투자자 | IR | 2022년 연간 경영실적 및 2023년 전망 | NDR |
| 2023.03.10 | 해외 기관투자자 | IR | 2022년 연간 경영실적 및 2023년 전망 | Citi 컨퍼런스 |
| 2023.03.31 | 국내 기관투자자 | IR | 2022년 연간 경영실적 및 2023년 전망 | 신한투자증권 컨퍼런스 |
| 2023.05.02~05.09 | 국내 기관투자자 | IR | 2023년 1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전망 | NDR |
| 2023.05.30 | 국내 기관투자자 | IR | 2023년 1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전망 | IBK투자증권 컨퍼런스 |

※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 소액주주와의 대화를 별도로 개최하지는 않았으나, 국민연금 등 소수 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외 기관투자자가 1%미만의 소액주주입니다.

또한,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있으며, 동시에 홈페이지 상단의 고객센터 탭을 통해 별도로 IR 관련 문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당사는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영문 공시를 제출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국인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편의를 위해 영문·중문 홈페이지를 국문 홈페이지와 동일한 구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외국인 주주의 비중이 현재보다 높아지고 대·내외 요청이 있을 경우 영문 공시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문공시 내역]

| 공시일자 | 공시제목 (영문) | 주요 내용(한글) |
|---------|-----------|-----------|
| 해당사항 없음 | | |

당사는 매분기 이사회 개최일 당일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 진행된 공정공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공시 내역]

| 공시일자 | 공시제목 | 주요 내용 |
|------------|-------------------------|----------------------------|
| 2022.01.26 |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2021년 4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
| 2022.04.29 |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2022년 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
| 2022.07.29 |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2022년 2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
| 2022.10.28 |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2022년 3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
| 2023.01.31 |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2022년 4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
| 2023.04.28 |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2023년 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

당사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및 그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 벌점 | 제재금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라.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정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당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는 회사 홈페이지(<http://www.hyosungtnc.com>) 및 DART(<http://dart.fss.or.kr>) 등의 공시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는 높아지는 주주들의 정보 요구 수준에 맞추어 다양하고 깊이 있는 IR 자료를 제공하여 주주들의 이해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이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홈페이지 내용의 적시성, 충실성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재무·주식·공시·IR 정보 등을 체계적이고 상세한 내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정관,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실적발표회 자료 등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주의 정보 습득이 용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2-②)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가.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와 관련한 통제 장치(정책)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기 위해 별도의 내부통제 관련 규범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8년 6월 1일 설립 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상법 제398조에 해당되는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및 그 외의 거래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대해 사전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하여 분기 50억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사전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련 거래에 대해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특별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정하여 회사의 경영활동 상 내부거래·자기거래 등에 대한 의사 결정 및 집행, 통제를 명확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부거래 통제 장치에 따라 진행된 2022년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사와 특수관계인간 채무보증 및 담보 내역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 제공받은 회사 | 관계 | 채권자 | 채무내용 | 채무보증 및 담보 | 거래내역 | | | |
|---------------------------------------|------------------|----------------|-------|-----------|--------|--------|---------|--------|
| |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주)세빛섬 주 1) | 계 열 회 사 | 뉴스타해치 유한회사외 | 시설자금 | 채무보증 | 98,400 | - | - | 98,400 |
| Hyosung Spandex (Jiaxing) Co., Ltd. | | 산업은행외 | 운영자금 | 채무보증 | 23,710 | 1,636 | - | 25,346 |
| Hyosung Spandex (GuangDong) Co., Ltd. | | 산업은행외 | 운영자금 | 채무보증 | 29,638 | 2,044 | - | 31,682 |
| Hyosung Spandex (Quzhou) Co., Ltd. | | 산업은행외 | 시설자금외 | 채무보증 | 64,610 | 11,023 | - | 75,633 |
| Hyosung Spandex (Zhuhai) Co., Ltd. | | 스탠다드 차타드은행 | 운영자금 | 채무보증 | 5,928 | 409 | - | 6,337 |
| Hyosung Chemicals (Jiaxing) Co., Ltd. | | 우리은행외 | 운영자금외 | 채무보증 | 32,423 | - | (9,612) | 22,811 |
| Hyosung Istanbul TEKSTIL LTD.STI. | | 우리은행 | 운영자금 | 채무보증 | 5,999 | - | (5,999) | - |

(기준일 : 2022 년 12 월 31 일)

(단위 : 백만원)

| 제공받은 회사 | 관계 | 채권자 | 채무내용 | 채무보증 및 담보 | 거래내역 | | | |
|--|----|--------------|-------|--------------|---------|---------|----------|-----------|
| |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Hyosung New Material & High Technology (Quzhou) Co., Ltd. | | 농협은행외 | 시설자금외 | 채무보증 | 83,522 | 5,632 | - | 89,154 |
| Hyosung Japan Co., Ltd. | | 하나은행외 | 운영자금 | 채무보증 | 137,273 | 16,917 | - | 154,190 |
| Hyosung India Private Limited | | 한국수출입 은행외 | 시설자금외 | 채무보증 | 139,551 | 70,364 | - | 209,915 |
| Hyosung International (HK) Ltd. | | 산업은행외 | 운영자금 | 채무보증 | 22,525 | - | (4,149) | 18,376 |
| Hyosung Spandex (Ningxia) Co., Ltd. | | 산업은행외 | 시설자금외 | 채무보증 | 170,855 | 205,522 | - | 376,377 |
| Hyosung Brasil Industria e Comercio de Fibras Ltda. | | 하나은행 | 운영자금 | 채무보증 | - | 35,990 | - | 35,990 |
| Hyosung Spandex (Jiaxing) Co., Ltd. 외 5 개 법인 <small>주 2)</small> | | 씨티은행 | 운영자금 | 채무보증 | - | 45,623 | - | 45,623 |
| 합 계 | | | | | 814,434 | 395,160 | (19,760) | 1,189,834 |

주 1) 회사는 2022 년말 (주)세빛섬 차입금에 대해 (주)세빛섬 주식(5,341,380 주, 장부가액 0)을 담보로 제공(담보 관련 차입금 잔액 79,900 백만원)하였으나, 2023 년 3 월 동 차입금에 대한 회사의 대위변제로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주)세빛섬에 대한 채무보증 및 담보내역은 없습니다.

주 2) Hyosung Spandex (Jiaxing) Co., Ltd. 외 5 개 법인 채무보증 건은 Hyosung Spandex (Jiaxing) Co., Ltd., Hyosung Spandex (GuangDong) Co., Ltd., Hyosung Spandex (Quzhou) Co., Ltd., Hyosung Spandex (Ningxia) Co., Ltd., Hyosung New Material & High Technology (Quzhou) Co., Ltd. 및 Hyosung Chemicals (Jiaxing) Co., Ltd. 등 6 개법인 통합 운영자금 차입 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건입니다.

(2) 회사와 특수관계자와의 영업상의 거래 내역 및 채권·채무 잔액

(기준일 : 2022 년 1 월 1 일 ~ 12 월 31 일)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 사 명 | 구 분 | | | |
|-----------------------------|---|--------------------|------|--------------------|---------------|
| | | 매출 등 ¹⁾ | 배당수익 | 매입 등 ¹⁾ | 유·무형 자산 취득 |
|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주)효성 | 10,508 | - | 172,640 | - |
| | 소 계 | 10,508 | - | 172,640 | - |
| 관계기업 | Zhangjiagang Xiaosha Coil Service Co., Ltd. | 4,654 | - | 478 | - |
| | 소 계 | 4,654 | - | 478 | - |

(기준일 : 2022 년 1 월 1 일 ~ 12 월 31 일)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 사 명 | 구 분 | | | |
|-------------|---|--------------------|---------|--------------------|---------------|
| | | 매출 등 ¹⁾ | 배당수익 | 매입 등 ¹⁾ | 유·무형 자산 취득 |
| 총속기업 | Hyosung Chemicals (Jiaxing) Co., Ltd. | 18,794 | 18,477 | 71,877 | - |
| | Hyosung International Trade (Jiaxing) Co., Ltd. | 23,382 | - | 12,491 | - |
| | Hyosung Spandex (GuangDong) Co., Ltd. | 20,837 | 22,718 | 592 | - |
| | Hyosung Spandex (Jiaxing) Co., Ltd. | 13,178 | 63,003 | 21,496 | - |
| | Hyosung Spandex (ZhuHai) Co., Ltd. | 8,177 | - | 4,595 | - |
| | Hyosung Spandex (Ningxia) Co., Ltd. | 15,623 | - | - | - |
| | Hyosung International (HK) Ltd. | 4,636 | - | 976 | - |
| | Hyosung Spandex (Quzhou) Co., Ltd. | 21,594 | - | - | - |
| | Hyosung New Material & High Technology (Quzhou) Co., Ltd. | 269 | - | - | - |
| | Hyosung Japan Co., Ltd. | 297,191 | - | 1,103 | - |
| | Hyosung TNC (Taiwan) Corporation | - | - | 1,942 | - |
| | Hyosung Corporation India Private Limited | - | - | 1,140 | - |
| | Hyosung Dong Nai Co., Ltd. | 161,436 | - | 95,792 | - |
| | Hyosung India Private Limited | 16,047 | - | 19 | - |
| | Hyosung Europe S.R.L. | 35,333 | - | 1,525 | - |
| | Hyosung Istanbul TEKSTIL LTDSTI. | 27,361 | 57,225 | 689 | - |
| | Hyosung Brasil Industria e Comercio de Fibras Ltda. | 12,169 | 25,142 | 519 | - |
| | Hyosung Mexico City, S.A. de C.V. | - | - | 923 | - |
| | (주)세빛섬 | - | - | 1,954 | - |
| | PT. HYOSUNG JAKARTA | - | - | 350 | - |
| 소 계 | 676,027 | 186,565 | 217,983 | - | |
| 기타 특수관계자 | Hyosung Holdings USA, Inc. | 137,470 | - | 1,275 | - |
| |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주) | 81 | - | 10 | - |
| | 공덕개발(주) | - | - | 259 | - |
| | 신동진(주) | - | - | 235 | - |
| | 트리니티에셋메니지먼트(주) | - | - | 24 | - |
| | Hyosung RUS. | - | - | 495 | - |
| | PT. HYOSUNG JAKARTA ²⁾ | - | - | 279 | - |
| | 효성티앤에스(주) | 1,537 | - | 607 | - |
| | 기타 | 12 | - | 6 | - |
| | 소 계 | 139,100 | - | 3,190 | - |

(기준일 : 2022 년 1 월 1 일 ~ 12 월 31 일)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 사 명 | 구 분 | | | |
|-----|--|--------------------|---------|--------------------|---------------|
| | | 매출 등 ¹⁾ | 배당수익 | 매입 등 ¹⁾ | 유·무형 자산 취득 |
| 기 타 | 효성중공업(주) | 3,372 | - | 1,271 | - |
| | 효성첨단소재(주) | 55,141 | - | 4,373 | - |
| | 효성화학(주) | 112,377 | - | 311,664 | - |
| | 진흥기업(주) | 175 | - | - | - |
| | 갤럭시아에스엠(주) | 619 | - | 86 | - |
| | 효성아이티엑스(주) | 7 | - | 160 | - |
| | Hyosung Vietnam Co., Ltd. | 418,540 | - | 22,039 | - |
| |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 992 | - | 4,068 | - |
| | Hyosung Quang Nam Co., Ltd. | 41,478 | - | - | - |
| | Nantong Hyosung Transformer Co., Ltd. | 1,044 | - | - | - |
| | 기타 | 17 | - | 650 | - |
| | 소 계 | 633,762 | - | 344,311 | - |
| 합 계 | 1,464,051 | 186,565 | 738,602 | - | |

1) 매출 등에는 매출, 기타수익, 이자수익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매입 등에는 원재료 매입, 판관비, 기타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당기 중 PT. HYOSUNG JAKARTA 의 지분을 인수하여 기타특수관계자에서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고, 동 거래는 기타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기간까지의 거래 금액입니다.

(기준일 : 2022 년 12 월 31 일)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 사 명 | 구 분 | | | |
|-----------------------------|---|--------|-------------------------|-------|-------------------------|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등 ¹⁾ | 매입채무 | 기타채무 등 ¹⁾ |
|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주)효성 | 122 | 1,603 | 2,856 | 12,158 |
| | 소 계 | 122 | 1,603 | 2,856 | 12,158 |
| 관계기업 | Zhangjiagang Xiaosha Coil Service Co., Ltd. | 170 | - | 77 | 16 |
| | 소 계 | 170 | - | 77 | 16 |
| 종속기업 | Hyosung Chemicals (Jiaxing) Co., Ltd. | 1,640 | 6 | 7,703 | - |
| | Hyosung International Trade (Jiaxing) Co., Ltd. | 1,682 | - | 2,934 | 156 |
| | Hyosung Spandex (GuangDong) Co., Ltd. | 3,195 | 3 | - | - |
| | Hyosung Spandex (Jiaxing) Co., Ltd. | 530 | 7 | 4,028 | - |
| | Hyosung Spandex (Zhuhai) Co., Ltd. | 1,556 | - | - | - |
| | Hyosung Spandex (Ningxia) Co., Ltd. | 13,469 | 698 | - | - |
| | Hyosung International (HK) Ltd. | 205 | - | - | 62 |

(기준일 : 2022 년 12 월 31 일)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 사 명 | 구 분 | | | |
|-------------|---|--------|-------------------------|--------|-------------------------|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등 ¹⁾ | 매입채무 | 기타채무 등 ¹⁾ |
| | Hyosung Spandex (Quzhou) Co., Ltd. | 16,504 | 17 | - | - |
| | Hyosung New Material & High Technology (Quzhou) Co., Ltd. | - | 22 | - | - |
| | Hyosung Japan Co., Ltd. | 2,561 | - | - | 51 |
| | Hyosung TNC (Taiwan) Corporation | - | - | 36 | 7 |
| | Hyosung Dong Nai Co., Ltd. | 6,075 | - | 22,304 | - |
| | Hyosung India Private Limited | 7,899 | 351 | - | - |
| | Hyosung Europe S.R.L. | 1,953 | - | 79 | 2,128 |
| | Hyosung Istanbul TEKSTIL LTD.STI. | 2,422 | 28,621 | - | 9 |
| | Hyosung Brasil Industria e Comercio de Fibras Ltda. | 4,237 | 25,144 | 33 | - |
| | Hyosung Mexico City, S.A. de C.V. | - | - | - | 10 |
| | PT. HYOSUNG JAKARTA ²⁾ | - | - | - | 62 |
| | (주)세빛섬 | - | 14,000 | - | 85,418 |
| | 소 계 | 63,928 | 68,860 | 37,117 | 87,903 |
| 기타 특수관계자 | Hyosung Holdings USA, Inc. | 631 | - | - | 1,296 |
| |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주) | - | 21 | - | - |
| | 공덕개발(주) | - | 1,365 | - | 5,717 |
| | 신동진(주) | - | 1,387 | - | 4,720 |
| | 트리니티에셋메니지먼트(주) | - | 699 | - | 931 |
| | 기타 | 39 | - | 371 | 9 |
| | 소 계 | 670 | 3,472 | 371 | 12,673 |
| 기 타 | 효성중공업(주) | 280 | 8,400 | - | 277 |
| | 효성첨단소재(주) | 3,313 | 2,000 | 368 | 877 |
| | 효성화학(주) | 8,311 | 1,158 | 21,577 | 524 |
| | 진흥기업(주) | 78 | - | - | - |
| | 갤럭시아에스엠(주) | - | - | 8 | - |
| | Hyosung Vietnam Co., Ltd. | 14,529 | - | 3,183 | - |
| |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 191 | - | 292 | 3 |
| | Hyosung Quang Nam Co., Ltd. | 902 | - | - | - |
| | 기타 | 1 | 50 | - | 48 |
| | 소 계 | 27,605 | 11,608 | 25,428 | 1,729 |
| 합 계 | | 92,495 | 85,543 | 65,849 | 114,479 |

1) 기타채권 등에는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채무 등에는 미지급금, 예수보증금, 리스부채, 지급보증충당부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당기 중 PT. HYOSUNG JAKARTA 의 지분을 인수하여 기타특수관계자에서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3) 2022년 발생한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 및 특수관계자의 유상증자 참여

2021년 12월 해외 계열회사인 Hyosung Spandex (Ningxia) Co., Ltd.의 유상증자 결정에 따라 2022년 자본금 \$30백만(36,050백만원)을 출자하였으며, 신설법인인 Hyosung Dong Nai Nylon Co., Ltd.에 대한 출자 결정(2022년 5월)에 따라 2022년~2023년 분할출자 중입니다.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 위임전결규정에 의거하여 동 거래에 대한 사전 경영위원회 의결을 진행하였습니다.

| 거래상대방 | 내용 | 비고 |
|---|---------------------|---|
| Hyosung Spandex (Ningxia) Co., Ltd.(계열회사) | \$30백만(36,050백만) 출자 | - 2021년 12월 경영위원회 승인 - 유상증자 총금액은 \$40백만으로, 효성티앤씨(주) 75%, Hyosung Istanbul TEKSTIL LTD.STI. 25% 출자함 (자본금 : 기존 \$68백만 → 변경 \$108백만) |
| Hyosung Dong Nai Nylon Co., Ltd. (계열회사) | \$31백만(41,848백만) 출자 | - 2022년 5월 경영위원회 승인 - 총 자본금 \$118백만으로 효성티앤씨(주) 100% 출자이며, 2022년~2023년내 분할출자 예정임. (2023년 현재까지 추가 \$41백만 출자) |

나.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 내용과 사유

당사는 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거래 중 국내외계열사들과 반복되는 동종·동형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을 진행하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공정거래법상 국내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 거래는 분기별 거래 예상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적 이사회 의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9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과의 건당 거래규모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1% 이상이거나 연간 거래규모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5% 이상인 경우에도 이사회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포괄적 사전 결의 후 정기주주총회에 해당 내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진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포괄적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의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내역

(기준일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 이사회 의결일 | 거래 상대방 | 거래 구분 | 거래 기간 | 거래 금액 | 비고 |
|------------|----------------------------|---------|----------|---------|-------------------|
| 2022.10.27 | Hyosung Dong Nai Co., Ltd. | 상품·용역거래 | 2022년 연간 | 300,000 | 21.10월 既승인대비 거래증가 |
| | Hyosung Holdings USA, Inc. | (매출/매입) | 2022년 연간 | 140,000 | |

| | | | | |
|--|---------------------------------------|----------|---------|-------------------|
| | Nantong Hyosung Transformer Co., Ltd. | 2022년 연간 | 2,500 |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금액과 동일 |
| | 효성티앤에스(주) | 2022년 연간 | 3,000 | |
| | (주)효성 | 2023년 연간 | 184,000 | |
| | 효성중공업(주) | 2023년 연간 | 6,500 | |
| | 효성티앤에스(주) | 2023년 연간 | 3,000 | |
| | 갤럭시아머니트리 | 2023년 연간 | 1,000 | |
| | 효성ITX | 2023년 연간 | 500 | |
| |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 2023년 연간 | 200 | |
| | Hyosung Istanbul TEKSTIL LTD.STI. | 2023년 연간 | 31,500 | |
| | Hyosung Dong Nai Co., Ltd. | 2023년 연간 | 330,000 | |
| | Hyosung Holding USA, Inc. | 2023년 연간 | 200,000 | |
| | Hyosung RUS. | 2023년 연간 | 1,000 | |

※ 매년 10월 국내외계열사와의 동종·동형의 거래에 대해 익년도 연간 예상거래금액 및 가격 결정조건 등을 일괄 승인받은 후, 시장상황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 변경승인 진행

(2)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내역

(기준일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 이사회 의결일 | 거래 상대방 | 거래 구분 | 거래 기간 | 거래 금액 | 비고 |
|------------|-----------|--------------------|-----------|---------|---------------------|
| 2022.01.26 | 효성첨단소재(주) | 상품·용역거래 (매출/매입) | 2022년 1분기 | 19,000 | 21.10월 既승인대비 거래증가 |
| | | | 2022년 2분기 | 15,000 | |
| 2022.04.29 | 효성첨단소재(주) | | 2022년 2분기 | 25,000 | 22.01월 既승인대비 거래증가 |
| | | | 2022년 3분기 | 12,000 | |
| | | | 2022년 4분기 | 12,000 | |
| | | | 2022년 2분기 | 120,000 | |
| | 효성화학(주) | | 2022년 3분기 | 120,000 | 21.10월 既승인대비 거래증가 |
| | | | 2022년 4분기 | 120,000 | |
| | | | 2023년 1분기 | 46,000 | |
| 2022.10.27 | (주)효성 | | 2023년 2분기 | 46,000 |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금액과 동일 |
| | | | 2023년 3분기 | 46,000 | |
| | | | 2023년 4분기 | 46,000 | |
| | | | 2023년 1분기 | 130,000 | |
| | 효성화학(주) | 2023년 2분기 | 130,000 | - | |
| | | 2023년 3분기 | 130,000 | | |
| | | 2023년 4분기 | 130,000 | | |
| | | 2023년 1분기 | 7,000 | | |
| | 효성첨단소재(주) | | | | |

※ 매년 10월 국내외계열사와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대규모내부거래 등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9조의2에 의거하여 익년도 분기별 예상거래금액을 일괄승인 받고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 변경승인을 진행

(3)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에 대한 이사회 내 위원회 의결 내역

① 공시대상기간 중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1%) 이상인 거래

(기준일 :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 종류 | 거래시점 | 거래금액 | 비율(%) ¹⁾ |
|--|-------|------------|-------|---------------------|
| Hyosung Spandex (Quzhou) Co., Ltd. (해외계열회사) | 채무보증 | 2022.03.18 | 308 | 1.91 |
| | | 2022.08.09 | 233 | 1.44 |
| Hyosung Spandex (Jiaxing) Co., Ltd. (해외계열회사) | 채무보증 | 2022.03.23 | 246 | 1.52 |
| Hyosung Spandex (GuangDong) Co., Ltd. (해외계열회사) | 채무보증 | 2022.05.10 | 253 | 1.57 |
| Hyosung Chemicals (Jiaxing) Co., Ltd. (해외계열회사) | 채무보증 | 2022.07.08 | 235 | 1.46 |
| Hyosung Spandex (Jiaxing) Co., Ltd. 외 5개법인 ²⁾ (해외계열회사) | 채무보증 | 2022.12.19 | 468 | 2.90 |
| Hyosung India Private Limited (해외계열회사) | 채무보증 | 2022.05.30 | 383 | 2.37 |
| | | 2022.08.19 | 261 | 1.62 |
| | | 2022.08.29 | 319 | 1.97 |
| Hyosung Japan Co., Ltd. (해외계열회사) | 채무보증 | 2022.05.01 | 226 | 1.40 |
| | | 2022.05.01 | 326 | 2.02 |
| | | 2022.07.16 | 235 | 1.46 |
| | | 2022.11.15 | 411 | 2.55 |
| Hyosung Spandex (Ningxia) Co., Ltd. (해외계열회사) | 채무보증 | 2022.01.10 | 558 | 3.46 |
| | | 2022.01.28 | 238 | 1.48 |
| | | 2022.03.16 | 585 | 3.62 |
| | | 2022.04.14 | 231 | 1.43 |
| | | 2022.04.19 | 316 | 1.96 |
| | | 2022.04.19 | 462 | 2.86 |
| | | 2022.05.24 | 345 | 2.13 |
| | | 2022.09.14 | 199 | 1.23 |
| | | 2022.10.28 | 215 | 1.33 |
| (주)세빛섬 ³⁾ (국내계열회사) | 채무보증 | 2022.09.28 | 984 | 7.97 |
| | 담보제공 | 2022.09.28 | 1,039 | 8.41 |

1) 2021 년도 별도 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 대비 거래금액 비율입니다.

2) Hyosung Spandex (Jiaxing) Co., Ltd.외 5 개 법인 채무보증 건은 Hyosung Spandex (Jiaxing) Co., Ltd., Hyosung Spandex (GuangDong) Co., Ltd., Hyosung Spandex (Quzhou) Co., Ltd., Hyosung Spandex (Ningxia) Co., Ltd., Hyosung New Material & High Technology (Quzhou) Co., Ltd. 및 Hyosung Chemicals (Jiaxing) Co., Ltd. 등 6 개 법인 통합 운영자금 차입 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건입니다.

3) 회사는 2022 년말 (주)세빛섬 차입금에 대해 (주)세빛섬 주식(5,341,380 주, 장부가액 0)을 담보로 제공(담보 관련 차입금 잔액 79,900 백만원)하였으나, 2023 년 3 월 동 차입금에 대한 회사의 대위변제로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주)세빛섬에 대한 채무보증 및 담보내역은 없습니다.

② 공시대상기간 중 연간 거래 총액이 일정 규모(5%) 이상인 거래

(기준일 :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 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¹⁾ |
|---|-------|----------------------------|-------|---------------------|
| Hyosung Japan Co., Ltd. (해외계열회사) | 채무보증 | 2022.01.01 ~ 2022.12.31 | 1,591 | |
| | 매출 | | 2,972 | |
| | 매입 | | 11 | |
| | 합계 | | 4,574 | 28.34 |
| Hyosung Vietnam Co., Ltd. (해외계열회사) | 매출 | 2022.01.01 ~ 2022.12.31 | 4,185 | |
| | 매입 | | 220 | |
| | 합계 | | 4,405 | 27.30 |
| Hyosung Spandex (Ningxia) Co., Ltd. (해외계열회사) | 채무보증 | 2022.01.01 ~ 2022.12.31 | 3,266 | |
| | 매출 | | 156 | |
| | 합계 | | 3,422 | 21.21 |
| Hyosung Dong Nai Co., Ltd. (해외계열회사) | 매출 | 2022.01.01 ~ 2022.12.31 | 1,614 | |
| | 매입 | | 958 | |
| | 합계 | | 2,572 | 15.94 |
| Hyosung Holdings USA, Inc. (해외계열회사) | 매출 | 2022.01.01 ~ 2022.12.31 | 1,375 | |
| | 매입 | | 11 | |
| | 합계 | | 1,386 | 8.59 |
| Hyosung Chemicals (Jiaxing) Co., Ltd. (해외계열회사) | 채무보증 | 2022.01.01 ~ 2022.12.31 | 235 | |
| | 매출 | | 188 | |
| | 매입 | | 719 | |
| | 합계 | | 1,142 | 7.08 |
| (주)효성 (국내계열회사) | 매출 | 2022.01.01 ~ 2022.12.31 | 105 | |
| | 매입 | | 1,726 | |
| | 합계 | | 1,831 | 11.35 |
| 효성화학(주) (국내계열회사) | 매출 | 2022.01.01 ~ 2022.12.31 | 1,124 | |
| | 매입 | | 3,117 | |
| | 합계 | | 4,241 | 26.27 |
| (주)세 빛섬 ²⁾ (국내계열회사) | 채무보증 | 2022.01.01 ~ 2022.12.31 | 984 | |
| | 담보제공 | | 1,039 | |
| | 매입 | | 25 | |
| | 합계 | | 2,048 | 12.69 |

1) 2021 년도 별도 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 대비 거래금액 비율입니다.

2) 회사는 2022 년말 (주)세빛섬 차입금에 대해 (주)세빛섬 주식(5,341,380 주, 장부가액 0)을 담보로 제공(담보 관련 차입금 잔액 79,900 백만원)하였으나, 2023 년 3 월 동 차입금에 대한 회사의 대위변제로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주)세빛섬에 대한 채무보증 및 담보내역은 없습니다.

(세부원칙 2-③) 기업은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에 있어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중대한 변동에 대한 주주보호 정책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의사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경우, 그 과정에서 상법 제360조의5, 제374조의2 및 제522조의3 등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함을 고지하여 반대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주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회사 정책을 검토하겠습니다.

나.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중대한 변동에 대해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된 내용 및 향후 계획 등

2022년 1월 1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또한 없습니다.

1. 이사회 기능

(핵심원칙 3)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3-①)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 이사회는 상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관련 법령 및 정관, 이사회운영규정 상에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 중장기 전략 및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및 이사회 내 위원회와 관련한 주요 사항 등을 의결합니다.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관 또는 이사회운영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 구 분 | 승인 사항 |
|-------------------------|---|
| 정관 또는 이사회운영규정상 이사회 결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기타 법령,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 중 위원회에 위임이 금지된 사항 |

(2)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중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의 사항

| 구 분 | 승인 사항 |
|----------------------------|--|
|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의 이사회 결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념의 제정·변경 - 중요한 업무제휴, 공동사업 전개(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 대표이사가 부의하는 중대한 경영사항 - 회계방침 변경 |

당사는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외의 상기 사항에 대해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여 각 의결 내용에 대한 중요성 및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회사 운영 전반에 걸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한 경우 관련 법상 의무화 되지 않은 사항임에도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의 발생 시 이사회를 통해 신중한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3) 이사회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에게 위임된 사항

| 구 분 | 승인 사항 |
|--------------------------------|--|
| 이사회운영규정상 경영위원회에 위임한 결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신규사업 및 투자에 관한 사항 - 신주의 발행에 관한 사항(일반공모증자, 우리사주발행, 주식예탁증서발행 등에 의한 신주발행 및 실권주, 단주의 처리 포함) -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 -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 우선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우선주식의 이익배당방식, 우선배당을 결정, 보통주로의 전환사항 등 포함) -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중요한 회사규정의 제정, 개정, 폐기에 관한 사항 - 지점, 공장, 영업소, 출장소, 현지법인 등의 설치 또는 폐쇄에 관한 사항 -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해임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설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으로 명시된 사항과 본 규정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 |

나. 이사회 경영감독 기능 및 의사결정 기능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과 제542조의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상장회사이나, 정관 제34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의2와 제11조의3에 의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외이사 비율을 50%(이사 6인 중 3인 사외이사) 이상으로 하여 법령상 기준보다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상법 제542조의9에서 별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일정 요건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고 처음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보고하는 사항을 당사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27조에 의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상 사업연도말 1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반기말, 사업연도말 연 2회 보고하고 있는 등 경영감독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정관 제34조에서는 효율적인 회사의 업무수행과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해 관계법령 및 정관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의4에 회사 경영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를 경영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는 동시에, 경영위원회의 결의 사항을 이사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분기별 결산이사회 시 해당 기간의 경영위원회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별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3-②)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에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규정 및 위원회)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고경영자에게 필요한 경영 역량을 “지속적인 이익 극대화를 위해 Profit Design을 할 수 있는가” 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영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육성하기 위해 신임 임원 대상으로는 신임 임원교육을, 재직 임원 대상으로는 MBA 동영상 콘텐츠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임원 후보자 대상으로는 GMC(Global Management Course) 임원 후보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즉 GMC 프로그램을 통해 핵심 인력 중 임원을 선발하고, 이렇게 선발된 임원은 MBA 동영상 콘텐츠 프로그램을 통해 최고경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사회에서는 이렇게 관리되는 임원 중에서 상법 제389조, 정관 제28조, 이사회 운영 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업 영역별 다양한 후보군을 선발·관리함으로써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있으며, 정관 제29조에 따라 회장 유고 시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하여 최고 경영자의 유고 등 비상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 사업연도의 시작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진행한 임원 대상 교육 현황 및 임원 후보자 대상 교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 대상 교육 현황]

| 일시 | 구분 | 참석인원 | 교육내용 | 비고 |
|--------------------|----|------|--|---------------|
| 2022.02.22 ~ 02.24 | 사내 | 20 | 임원의 역할/책임, 그룹경영 이해, 경영역량 강화 | 실시간 비대면 교육 |
| 2022.05.17 ~ 12.31 | 사내 | 234 | 그룹 경영방침(브랜드 전략, ESG경영) 및 주요 경영기능 이해(전략경영, 인사/조직관리/ 재무회계/B2B마케팅/생산관리/DT 전략) | 동영상 콘텐츠 |

※ (주)효성 및 효성티앤씨(주)를 포함한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 기준입니다.

[임원 후보자 대상 교육 현황]

| 일시 | 구분 | 참석인원 | 교육내용 | 비고 |
|--------------------|----|------|--|---------------|
| 2022.04.22 ~ 09.16 | 사내 | 31 | 주요 경영기능의 이해 (전략경영, 마케팅, 회계, 생산관리, 인적자원관리) | 실시간 비대면 교육 |

※ (주)효성 및 효성티앤씨(주)를 포함한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 기준입니다.

(세부원칙 3-③) 이사회는 내부통제정책(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가. 내부통제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의 내부통제정책은 임직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역할과 책임, 준법감시인 제도, 행동규범, 내부 통제체계, 주요 업무별 유의사항, 준수 여부 점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내부통제정책과 관련된 리스크 관리 및 준법 경영, 내부회계관리를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절차 및 기준에 대해 준법통제기준, 내부회계관리규정, 공시정보관리규정, 투자관리규정, 보안규정을 제정하고, 시황 및 정책 환경 등의 대내외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법적자격요건을 갖춘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해당 사실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경영진과 임직원의 준법여부 및 회사경영활동의 적법성을 감시하는 한편, 전사 또는 조직별 준법 담당자를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진행하고 연 1회 이상 주요 활동 내역 및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준법지원활동을 통하여 내부통제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동안 준법통제기준에 따라 준법지원활동을 수행한 결과, 특별한 위법사항은 없었으며 임직원의 법규준수를 위하여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영업비밀보호법 등 주요 법률 내용과 법위반 사례 등 윤리교육을 본사 및 공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준법경영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으로 계약체결 현황 점검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였고, 발견된 주요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피드백하여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상적인 준법지원을 위해 상시적인 법률자문업무와 계약서 사전심사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영업활동과 관련된 주요 법률 제·개정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법적 Risk를 사전에 파악하고 철저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준법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내부통제와 관련해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공시 되었는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정하고, 전사수준, 프로세스수준, 일반 전산수준의 통제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27조에서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하고, 감사위원회는 동 실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연 2회 이사회에 대면보고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해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인 역할 및 책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보고 및 평가 등을 반영하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을 2019년 1월에 개정하였고, 이후 순차적으로 내부회계 고도화 TFT 및 내부회계관리 담당 TFT를 신설하여 적극적인 관리 및 통제체계를 운영하며 회사의 투명경영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규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공시담당부서와 사업부서 간 연계를 통해 적시성 있고 정확한 공시 및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내부 전자품의 공통양식 내 거래소 주요 공시사항 및 공시기준을 별도 안내하여 지연공시가 되거나 누락될 위험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관련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지주회사인 (주)효성에서 운영하는 효성기업집단 공시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공시자료를 작성 및 검토하여 기재사항 오류 등을 지주사와 대조 및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 공시책임자 및 담당자는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및 상장사협의회 등에서 주최하는 수시 및 정기교육에 참석하여 법규정 개정에 따른 공시서식 및 공시의무의 변경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 외 추가적으로, 회사 이익창출의 근본이 되는 투자의 체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투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투자의 계획·집행·관리 및 결과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자본운영을 효율화하고자 투자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규정 등으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급변하는 환율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Case별 환리스크 헷지 방안(선물환 등)을 검토 후 내부적으로 원칙과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자산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각종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보안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구성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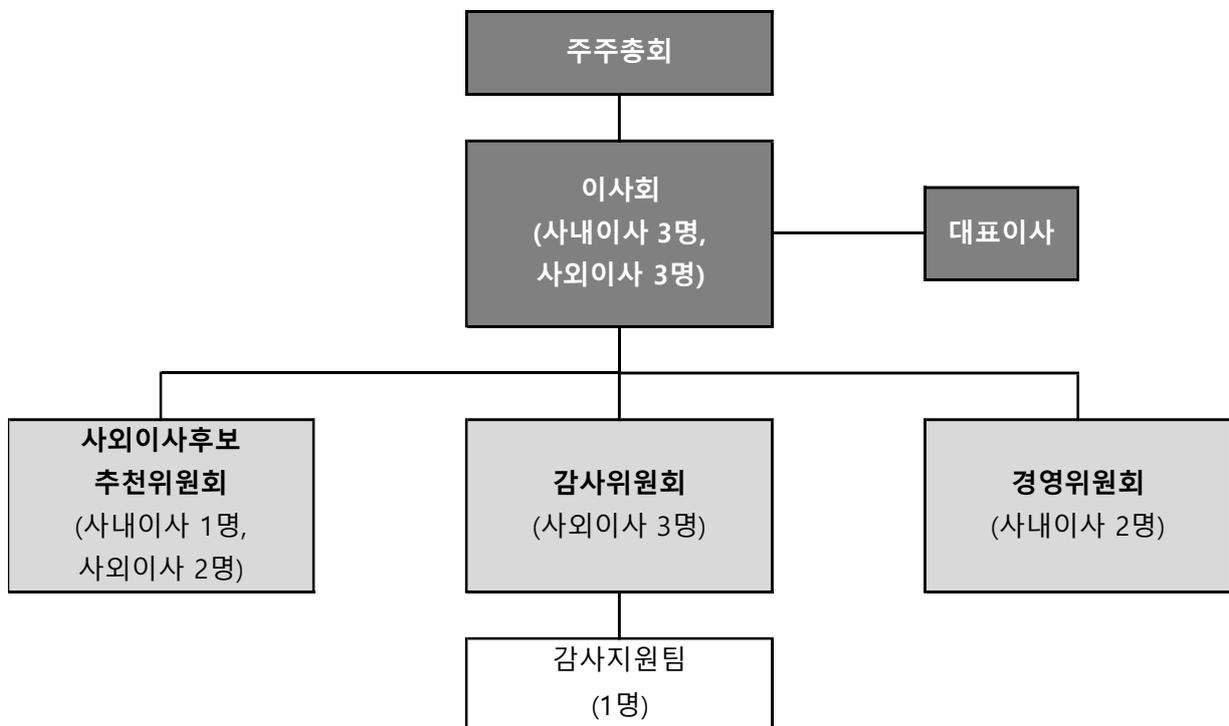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4-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가. 이사회 구성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관련 조직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효성티앤씨(주) 이사회 관련 조직도]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24조에 따라 3명 이상 16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할 수 있으며, 상법상 요건 충족 및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외이사가 3명 이상 및 이사 총수의 50%이상이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대표이사 1명, 사내이사 2명) 및 사외이사 3명, 총 6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입니다. 이사회 구성원 6명 중 3명이 사외이사(비중 50%)이며, 당사는 이사 간 원활한 의견 조율 등 이사회 운영 효율성을 위해 대표이사과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임 사외이사 또한 별도로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8년 4월 27일 개최된 (주)효성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통하여 효성티앤씨(주) 사내이사 김용섭, 이천규와 사외이사 장승철, 오병희, 최병덕, 윤의준이 최초 선임되었습니다.

최초 선임된 사외이사 중 장승철 사외이사가 2019년 7월 9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함에 따라, 상법 제386조 및 제415조에 의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일시사외이사 및 일시감사위원 선임을 신청하여 2019년 8월 19일 법원의 결정으로 조인강 사외이사가 일시사외이사 및 일시감사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당사는 2020년 3월 19일 제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존 사내이사 2명을 재선임하였으며, 감사기능의 강화 및 회사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병희, 최병덕, 윤의준 사외이사를 재선임하였고, 일시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조인강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2021년 3월 18일 이천규 사내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임기만료 전 사임하였고, 같은날 개최된 제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김문선 사내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1일 윤의준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함에 따라, 상법 제386조 및 제415조에 의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일시감사위원 선임을 신청하여 2021년 10월 26일 법원의 결정으로 오병희 사외이사가 일시감사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022년 3월 17일에는 김용섭 사내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임기만료 전 사임하였고, 합리적이며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같은날 개최된 제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2명의 사내이사(조현준 사내이사, 김치형 사내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기능의 연속성을 위해 오병희, 조인강, 최병덕 사외이사를 재선임하였습니다.

2023년 3월 16일에는 김문선 사내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임기만료 전 사임하였고, 같은날 개최된 제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배인한 사내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모두 상법 및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금융·재무·회계·법률·의학 등 각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 등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당사 이사회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17일

제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재선임 3명, 신규선임 2명)한 후, 2022년 3월 19일 이사회에서 김치형 사내이사를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명 | 성별 (만 나이) | 직책 | 선임일 ¹⁾ | 임기만료 예정일 ²⁾ | 연임 횟수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 사 내 이 사 | 김치형 | 남 (62세) |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경영위원회 대표위원 | 2022.03.17 | 2024.03.16 | - | 기업 경영 | 서울대 화학공학과 前)㈜효성 스판텍스PU장, Hyosung Istanbul TEKSTIL LTD.STI. 법인장 現)효성티앤씨(주) 대표이사 부사장 |
| | 조현준 | 남 (55세)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 2022.03.17 | 2024.03.16 | - | 기업 경영 | 前)㈜효성 전략본부장, 섬유PG장, 무역PG장, 정보통신PG장 現)㈜효성 회장 |
| | 배인한 | 남 (59세) | 경영위원회 위원 | 2023.03.16 | 2025.03.20 | - | 기업 경영 | 서울대 화학공학과 前) Hyosung India Private Limited 법인장, 스판텍스PU장 現)효성티앤씨(주) 전무, Hyosung Dong Nai Co., Ltd. 법인장 |
| 사 외 이 사 | 오병희 | 남 (70세)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대표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 2018.06.01 | 2024.03.16 | 2회 | 의료, 바이오 | 서울대 의학박사 前)서울대병원 병원장 現)인천세종병원 병원장 |
| | 조인강 | 남 (65세) | 감사위원회 대표위원 | 2020.03.19 | 2024.03.16 | 1회 | 금융, 회계, 재무 | 서울대 산업공학과 前)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現)㈜케이씨티시 사외이사 |
| | 최병덕 | 남 (68세) |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 2018.06.01 | 2024.03.16 | 2회 | 법률 (변호사) | 서울대 법학과 前)사법연수원장 現)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 |

1) 최초 선임일 기준임

2) 당사 등기임원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상기 임기만료 예정일에는 예상 정기주주총회 일자를 기재하였습니다.

- ※ 상기 이사 중 오병희, 조인강, 최병덕 사외이사는 기존 임기만료일(2022.3.18) 전인 당사 제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일(2022.3.17)에 사임 후, 같은 날 같은 직위로 당해 주주총회에서 재선임하였습니다.
- ※ 상기 임원 중 배인한 사내이사는 2023.3.16에 개최된 당사 제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 ※ 상기 임원 중 조인강 사외이사는 2019.8.19에 법원의 결정으로 당사의 일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2020.3.19에 개최된 당사 제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별도 자산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이지만, 상법 제542조의8 및 제542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3명 중 2명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3명 전원 사외이사)를 설치하여 독립성과 경영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외에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위원회(사내이사 2명)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현황]

| 위원회 | 구성 | | | | | 위원회의 주요 역할 | 비고 |
|--------------------------|-------|-------|-----|----|------------------|---|----|
| | 직책 | 구분 | 성명 | 성별 | 겸임 ¹⁾ | | |
|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총 3인) (A) | 대표 위원 | 사외 이사 | 오병희 | 남 | B | 1. 사외이사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 2. 주주총회가 선임할 이사 후보 추천 3. 상시적인 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 - |
| | 위원 | 사외 이사 | 최병덕 | 남 | B | | |
| | 위원 | 사내 이사 | 조현준 | 남 | - | | |
| 감사위원회 (총 3인) (B) | 대표 위원 | 사외 이사 | 조인강 | 남 | - | 1. 회사의 회계와 업무감사에 관한 사항 2.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령 및 정관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에 부여된 사항 | - |
| | 위원 | 사외 이사 | 오병희 | 남 | A | | |
| | 위원 | 사외 이사 | 최병덕 | 남 | A | | |
| 경영위원회 (총 2인) (C) | 대표 위원 | 사내 이사 | 김치형 | 남 | - |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신규사업 및 투자에 관한 사항 3. 신주의 발행에 관한 사항 4.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 6.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7.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8. 우선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위원 | 사내 이사 | 배인한 | 남 | - | 9.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0. 중요한 회사규정의 제정·개정·폐기에 관한 사항 11. 지점, 공장, 영업소, 출장소, 현지법인 등의 설치 또는 폐쇄에 관한 사항 12.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해임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3.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설정에 관한 사항 14. 기타 이사회에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에 부여할 사항으로 명시된 사항과 본 규정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 |
|--|----|----------|-----|---|---|--|

1) 타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이사회내 위원회' 코드(ex. A, B, C, ...) 표기함

나. 이사회에 효과적인 의사결정 및 독립성 확보 여부

당사 이사회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를 통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 6명 중 3명이 사외이사(비중 50%)로써, 상법상 기준을 상회하여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원칙 4-②)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에 전문성 및 다양성 확보 관련 전반적인 사항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는 이사회에 전략적인 판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해 각 이사의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사는 이사회에 전문성과 관련하여, 사내이사의 경우 미등기임원을 대상으로 사내이사 후보자 인력 Pool을 구성하고 있으며, 후보자들 중에 전문성과 비전, 리더십 등의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사내이사 후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내 최고전문가가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이사회에 참여하여 대표이사를 맡아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각 또한 필요하기에 당사의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재무, 회계, 법률, 의료 등의 여러 전문분야를 가진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이사 6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 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통하여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체인 이사회가 다양한 전문성에 기반한 결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성명 | 최초 선임일 | 임기 만료(예정)일 ¹⁾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여부 |
|-------|-----|------------|--------------------------|------------|------|---------|
| 사내 이사 | 조현준 | 2022.03.17 | 2024.03.16 | 2022.03.17 | 신규선임 | 재직 |
| | 김치형 | 2022.03.17 | | 2022.03.17 | 신규선임 | 재직 |
| | 배인한 | 2023.03.16 | 2025.03.20 | 2023.03.16 | 신규선임 | 재직 |
| | 김용섭 | 2018.06.01 | 2022.03.17 | 2022.03.17 | 사임 | 퇴직 |
| | 김문선 | 2021.03.18 | 2023.03.16 | 2023.03.16 | 사임 | 퇴직 |
| | 이천규 | 2018.06.01 | 2021.03.18 | 2021.03.18 | 사임 | 퇴직 |
| 사외 이사 | 오병희 | 2018.06.01 | 2024.03.16 | 2022.03.17 | 재선임 | 재직 |
| | 최병덕 | 2018.06.01 | | 2022.03.17 | 재선임 | 재직 |
| | 조인강 | 2020.03.19 | | 2022.03.17 | 재선임 | 재직 |
| | 윤의준 | 2018.06.01 | 2021.10.01 | 2021.10.01 | 사임 | 퇴직 |

1) 당사 등기임원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상기 임기만료(예정)일에는 예상 정기주주총회 일자를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김용섭 사내이사와 김문선 사내이사, 이천규 사내이사의 현재 재직여부는 등기이사 직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나.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배경 및 전문성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3명의 사내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인 김치형 사내이사는 당사 분할 이전 (주)효성 스판덱스PU장, (주)효성 Hyosung Istanbul TEKSTIL LTD.STI. 법인장 등을 역임하며, 스판덱스를 비롯한 섬유 산업 전반에 관한 깊은 안목과 경영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현준 사내이사는 (주)효성 전략본부장, 섬유PG 및 무역PG장 등을 역임하며 쌓은 고도의 전문지식 및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실적 향상을 달성하여 회사의 성장과 기업 및 주주가치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 있어서도 그 역할과 책임을 훌륭하게 수행해왔습니다. 배인한 사내이사 역시 분할 전 (주)효성 스판덱스PU 구미공장장, 당사 Hyosung India Private Limited 법인장 등을 역임하며, 섬유사업 관련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뛰어난 사업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사와 관련된 다양한 실무 경험 및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내이사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명이 사외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병희 사외이사는 인천세종병원 병원장으로 역임

중이며 과거 서울대학교 병원장,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회장, 한국국제의료협회 회장 등을 역임한 의료 분야 전문가로서 다양한 행정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경험 및 리더십을 바탕으로 경영진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당사의 사외이사 첫 임기 동안 적극적인 참여로 이사회 역할 수행과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최병덕 사외이사는 법무법인 동인 대표 변호사로, 과거 사법연수원장, 수원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경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수행하며 쌓은 법률적 지식과 준법 정신을 바탕으로 기업의 윤리경영에 기여하고 있으며, 당사의 사외이사 첫 임기 동안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독립성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견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조인강 사외이사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과 신용보증기금 상임감사 등을 역임한 금융·경제·재무·회계 분야 전문가로서, 당사의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 및 재무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전문가적 식견을 토대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결산을 비롯한 경영전반에 대한 감독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4-③)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사내·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추천위원회 설치, 구성 및 활동 내역

당사의 이사는 분야별로 폭넓게 구축되어 있는 후보군 중에서 실무 경험과 전문성에 비추어 당사의 이사로서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및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결격 요건에 해당사항이 없는지 등을 유관 부서와의 인터뷰 및 관련 서류의 면밀한 검증 등을 통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내이사 후보의 경우 이사회에서 사전검토를 통해 후보에 대한 자격 및 자질 검증 절차를 거친 후 주주총회에 추천할 후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은 사내이사 후보에 대해서도 추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나, 사내이사에게는 일정 수준 이상의 당사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요구되는 바, 사내이사 추천인으로 이사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 결의 절차를 거쳐 주주총회에 이사 후보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인의 사외이사와 1인의 사내이사(사외이사 비율 67%)로 구성되며, 사외이사가 대표위원을 맡아 독립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전문성, 독립성,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등을 기준으로 하는 사외이사 후보자의 직무수행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 주주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당사 주주총회 시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제공 내역은 아

래와 같습니다.

[주주총회 시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 | 주주총회일 | 이사 후보 | | 정보제공 내역 | 비 고 |
|-------------------------|------------|-------|-------------------|---|-----|
| | | 구분 | 성명 | | |
| 2022.02.24 (주총 21일전) | 2022.03.17 | 사내 | 조현준 김치형 | 1. 후보자의 세부경력 및 전문분야 2. 후보자의 체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후보자에 대한 추천사유(이사회) | - |
| | | 사외 | 오병희 조인강 최병덕 | 1. 후보자의 세부경력 및 전문분야 2. 후보자의 체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후보자에 대한 추천사유(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5. 후보자의 직무수행 계획 | - |
| 2023.02.23 (주총 21일전) | 2023.03.16 | 사내 | 배인한 | 1. 후보자의 세부경력 및 전문분야 2. 후보자의 체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후보자에 대한 추천사유(이사회) | - |

당사는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된 제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21일전, 제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21일전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공시하여 주주들이 후보 관련 정보를 충분한 시간 동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해당 공시에 각 후보자들의 세부경력 및 전문분야, 체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후보자에 대한 추천사유 등을 안내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당사는 분·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각 이사의 매회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여부 등을 공시함으로써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에 대해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 이사 후보 선정 및 이사 선임 시 소수주주 의견 반영 여부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은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의 채택을 권고 중이나,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집중투표제의 도입에 대해 신중한 고민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당사는 현재 정관상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소수주주 의견 반영과 관련하여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제안권과 관련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접수된 주주제안은 없습니다.

라. 이사회추천 및 선임 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는 이사회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회사 내부 실정에 적합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사회추천 및 선임과 관련한 프로세스 상 개선 가능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원칙 4-④)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가. 임원 현황

보고서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 임원은 50명으로, 등기 임원과 미등기 임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등기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해당 인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법령 및 정관에 정해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합니다. 미등기 임원은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의 필요에 따라 소관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담당 임원을 말하며, 그 현황은 매분기마다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분·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임원현황(미등기 임원 포함)]

| 성명 | 성별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
| 조현준 | 남 | 회장 (사내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전사 경영전반 총괄 |
| 김치형 | 남 | 부사장 (대표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전사 경영전반 총괄 |
| 이창황 | 남 | 부사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중국 스파덱스법인 동사장 및 가흥화공 동사장 |
| 이건중 | 남 | 부사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취저우 네오캠법인 동사장 |
| 노재봉 | 남 | 부사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세빛섬사업단장 |
| 김종민 | 남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도쿄법인장 |
| 배인한 | 남 | 전무 (사내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동나이법인장 |
| 심상룡 | 남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구매 담당 |
| 최종일 | 남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재무실장 |
| 김기현 | 남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철강 2PU 장 |
| 김영수 | 남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철강 1PU 장 |

| 성명 | 성별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
| 김용태 | 남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가흥 판매법인 화동영업 담당 |
| 김철수 | 남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NYPET 원사 PU 구미공장장 |
| 박성열 | 남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가흥판매법인 상해분공사 총경리 |
| 석병식 | 남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스판텍스 PU 기획 담당 |
| 송기철 | 남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동나이법인 Nylon 사업 담당 |
| 신경중 | 남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가흥 판매법인 화남영업 담당 |
| 안준모 | 남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스판텍스 PU 임원 |
| 유선형 | 남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동나이법인 관리본부 담당 |
| 이시연 | 남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인도 델리법인장, 인도스판텍스법인장 |
| 이인덕 | 남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밀라노법인장 |
| 임규호 | 남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터키스판텍스법인장 |
| 임장규 | 남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스판텍스 PU CMO |
| 조도준 | 남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브라질스판텍스법인장 |
| 주영돈 | 남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동나이법인 PTMG 및 Nylon 증설 담당 |
| 최학철 | 남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섬유 PG 울산공장 관리 담당 |
| 현광철 | 남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취저우 네오캠법인 총경리 |
| 홍종진 | 남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화학 PU 장 |
| 이정훈 | 남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동나이법인 재무 담당 |
| 최봉구 | 남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스판텍스 PU Diaper 영업 담당 |
| 김성수 | 남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가흥화공법인 총경리 |
| 이재우 | 남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직물/염색 및 패션디자이너 담당 |
| 손해성 | 남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터키스판텍스법인 영업 담당 |
| 고영철 | 남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NYPET 원사 PU 기획관리 담당 |
| 강태호 | 남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NYPET 원사 PU PET 영업 담당 |
| 김성수 | 남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홍보 담당 |
| 장기수 | 남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경영전략실 임원 |
| 홍재형 | 남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프랑크푸르트지사장 |
| 유상훈 | 남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스판텍스 PU 구미공장장, SCPO |
| 유소라 | 여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스판텍스 PU 섬유마케팅 담당, 테크니컬서비스 담당 |
| 이성수 | 남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중국 구매 담당 |
| 이승욱 | 남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회계담당 임원 |
| 배재범 | 남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광동/주해 스판텍스법인 총경리 |
| 정영환 | 남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동나이법인 스판텍스부문 영업담당 |
| 정준재 | 남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NYPET 원사 PU 장 |
| 강대찬 | 남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닝샤스판텍스법인 총경리 |
| 오준석 | 남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동나이법인 PTMG 공장장 |
| 오병희 | 남 | 사외이사 (감사위원) | 등기임원 | 비상근 | 전사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 최병덕 | 남 | 사외이사 (감사위원) | 등기임원 | 비상근 | 전사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 성명 | 성별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
| 조인강 | 남 | 사외이사 (감사위원) | 등기임원 | 비상근 | 전사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나.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를 위한 정책

당사는 임직원에게 윤리경영 실천 기준을 제시하고 투명한 기업 운영을 위해 '윤리강령'과 실천적 세부 지침을 담고 있는 '실천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부패 방지준수 규정 수립, 윤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비윤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전사 임직원의 윤리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HR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 담당 임원의 직속 기구인 HR 상담실을 통해 임직원들은 업무 과정에서의 고충 사항에서부터 성희롱, 횡령, 인사 부정 등 비윤리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내부 감사 규정을 수립하여 운영 중이며 현장 업무에서부터 각종 제보에 대한 조사까지 경영 전반에 대한 내부 감사를 통해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활동 등을 통해 당사는 회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건전한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회사의 금품을 횡령, 절취, 사취, 유용,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한 자",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태만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 등 기업가치의 직접적인 훼손 또는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해고 등 즉각적인 징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확정된 징계 사항에 대해서는 근무 성적 평정 및 각종 인사에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임원을 영입하는 경우에도 여러 차례의 심층 인터뷰, 평판 조회 등을 통해 해당 후보자가 과거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관련한 이력이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다. 횡령·배임·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거나 혐의 있는 자의 임원선임 여부

당사는 제4기 정기 주주총회(2022.03.17)에서 조현준 사내이사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조현준 사내이사는 2014년 1월 9일 기소된 횡령 혐의에 대해 2020년 12월 30일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 외 현재 진행중인 재판이 있습니다.

조현준 사내이사는 효성그룹의 총수로서 책임경영의 원칙을 이행하고 회사 및 그룹의 신성장 동력을 구축하며,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당사의 사내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그룹 총수로서 조현준 사내이사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회사의 경영을 위해 필수적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책임경영의 원칙 하에 회사의

발전을 위해 힘써 모든 주주들의 주주가치를 더욱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당사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집행임원제도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 결정 및 감독은 상호 연관성이 높아 분리하여 운영하기 보다는 동일 주체인 이사회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의 책임

(핵심원칙 5) 사외이사의 책임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원칙 5-①)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사외이사와 당사 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관한 사항

현재 재직 중인 당사의 사외이사는 관계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후보 추천 시부터 '경영진에 대한 독립성'을 선발요건 중에 하나로 고려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 선임 시 상법 상의 '사외이사 독립성'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이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및 보고서 제출일(2023년 5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당사의 사외이사(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당사의 계열회사 포함)간의 거래 내역 및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당사의 계열회사 포함)간의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재직 중인 사외이사와 당사·계열회사 등과의 최근 3년 이해관계]

| 성명 | 사외이사가 과거 당사·계열회사에 재직 한 내용 | | 사외이사(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의 거래내역 | |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의 거래내역 | |
|-----|---------------------------|----------|---|----------|---------------------------------------|----------|
| | 당사 | 당사의 계열회사 | 당사 | 당사의 계열회사 | 당사 | 당사의 계열회사 |
| 오병희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조인강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최병덕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나. 장기 재직 사외이사 존재 여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 각각의 재직기간 관련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6년(계열회사 포함 9년)을 초과하여 장기 재직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 성명 | 당사 | | 계열회사 포함시 | |
|-----|---------|--------------|----------|--------------|
| | 재직기간 | 6년 초과 시 그 사유 | 재직기간 | 9년 초과 시 그 사유 |
| 오병희 | 5년 | - | 5년 | - |
| 조인강 | 3년 10개월 | - | 3년 10개월 | - |
| 최병덕 | 5년 | - | 5년 | - |

※ 사외이사 조인강은 2019년 8월 19일 법원의 결정으로 일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2020년 3월 19일 개최된 당사 제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다만, 상기 재직기간은 일시사외이사로 재직 한 기간을 포함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다. 사외이사 선임 시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사외이사 후보자 관련 자료를 통한 결격요건 검증뿐만 아니라, 법무·인사 등 관련 부서의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터뷰 및 평판 조회 등을 통하여 상법이나 공직자 윤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중인 사외이사 자격 요건은 물론, 전문성·직무공정성·윤리책임성·충실성 등의 자격요건을 충실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철저한 내부 점검 절차를 통해 결격 사유 및 당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적법하고 독립적인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5-②)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관련 전반적인 사항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 및 동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사외이사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으며, 당사에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경우 그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정기이사회와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중인 사외이사 겸직 현황]

| 성명 (감사위원) | 최초 선임일 | 임기 만료일 ¹⁾ | 현 직 | 겸직 현황 | | | |
|---------------|------------|-------------------------|------------------|----------|------|-------------------|--------------|
| | | | |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재직기간 | 겸직기관 상장여부 |
| 오병희 (감사위원) | 2018.06.01 | 2024.03.16 | 인천세종병원 병원장 | - | - | - | 해당없음 |
| 조인강 (감사위원) | 2020.03.19 | | (주)케이씨티시 사외이사 | (주)케이씨티시 | 사외이사 | 2023.03.24 ~현재 | 해당없음 |
| 최병덕 (감사위원) | 2018.06.01 | |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 | - | - | - | 해당없음 |

1) 당사 등기임원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상기 임기만료일에는 예상 정기주주총회 일자를 기재하였습니다.

나.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시간과 노력 투입 여부

사외이사 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사회가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외이사는 사내이사에 비해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으므로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경영진에게 객관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기에, 사외이사의 견고한 위상 및 충실한 직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의 투입을 요구하게 됩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이를 인지하고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직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현재까지 개최된 모든 정기 및 임시이사회에 전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5-③)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가. 기업의 사외이사 직무수행 지원 정책 및 운영 현황

당사에는 이사회 간사(재무실장)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부서(이사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자금팀, 감사위원회 : 감사지원팀, 경영위원회 : 경영기획팀)가 있어, 신임 사외이사에 대한 회사 소개, 사외이사에 대한 이사회 안건의 사전 보고, 회사 경영정보의 제공 및 발송, 기타 직무수행 시 요청사항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당사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분기별로 주요 사업의 현황 및 이슈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당사는 이사의 역할과 법적 책임 등에 관한 내·외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사 주체의 내부 교육은 2022년 1월 방문설명을 통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정거래법에 대한 안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 2월에는 전화설명을 통해 개정상법에 따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인 분리 선출 등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4월과 7월, 10월에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에 대한 안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당사는 현재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정기·임시 회의를 개최하거나 이를 위한 절차를 회사 내부적으로 마련한 적은 없었습니다. 향후에는 사외이사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요청이 있을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 후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정기·임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외이사만의 회의 개최 내역]

| 회차 | 정기 /임시 | 개최 일자 | 출석 사외이사 /전체 사외이사 | 회의 사항 | 비고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나.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의 충분한 제공 여부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당사는 사외이사들의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시 방문 설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외이사들이 추가적으로 질의 또는 보완 요청하는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 경영활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시 국내외 경영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 사외이사들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핵심원칙 6)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6-①)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가. 사외이사의 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 활동과 관련하여, 업무 시 수반되는 책임과 역할, 재임 기간 중 담당 업무 관련 실적, 이사회 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의견 개진(참여도)과 회의 출석률 등을 지속적으로 기록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회사 내부 관리 자료를 바탕으로 사외이사 재선임 시 해당 이사의 참석률 및 활동 내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자기평가, 상호평가, 직원평가 및 외부평가 등의 평가방법 및 재선임 시 이를 반영하는 절차, 규정은 아직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바, 향후 사외이사의 재선임 시 전문성·기여도·공정성 등의 항목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제도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방안 및 정량적 평가기준과 정성적 평가기준을 포함하는 평가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단, 적용 시기 및 구체적인 방법 등은 회사 내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세부원칙 6-②)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당사의 정책상 사외이사 보상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외부 등을 통한 별도의 평가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사외이사의 보상 역시 평가 결과에 연동해서 진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실적에 근거한 평가 결과를 근거로 보상을 지급할 경우 사외이사 활동의 독립성·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직무 수행의 책임과 역할 등만을 감안한 자체 보상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보상 항목은 기본 급여로 한정하고 있으며 기본 급여 외에 성과급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별도 보수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388조, 정관 제26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회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를 통해 사내 및 사외이사 전체에 대한 보상 규모를 확정하고 있으며, 세부 보수 내역을 매 사업연도마다 전자공시시스템의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법적 책임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사회통념상 회사의 규모를 감안하여 동종·유사업계의 보수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사외이사의 보수가 평가 결과 등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

당사는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회의참석료, 독립성, 기여도 등의 종합적인 기준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정한 내부평가 기준 정립을 검토할 예정이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당 평가 결과를 사외이사의 보수산정 및 재선임 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 적용 시기 및 구체적인 방법 등은 회사 내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5. 이사회 운영

(핵심원칙 7) 이사회 운영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7-①)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이사회 구성, 권한과 책임, 소집과 결의방법, 운영절차 등 이사회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당사 정관과 이사회운영규정에 정의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라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됩니다.

정기 이사회는 상법 제393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매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447조의3에 따라 주주총회 6주 전 재무제표의 감사위원회 제출 및 이사회 승인, 주주총회 승인 안건에 대한 이사회 사전 승인과 3월 정기 주주총회 소집 등을 고려하여 2월 주주총회소집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정기 주주총회 이후 수일 내 이사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 선임을 위한 호선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기적인 이사회 승인 사항의 발생 또는 일정상 정기 이사회 부의가 어려운 경우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 이사회는 이사회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며, 제8조에 따라 적어도 개최 1일 전까지는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사 전원의 동의 시에는 이러한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사는 각 이사진이 안건 심의 및 승인에 있어 최선의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매 이사회 개최일 전에 각 안건에 대한 사전 보고와 질의 응답을 대면 실시하고, 이사들의 추가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개최일 전까지 성실히 지원하여 이사회 안건 심의의 내실화를 기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2022년 1월 1일)부터 공시서류제출일(2023년 5월 31일) 현재까지 진행된 정기/임시 이사회 개최 내역 및 사전에 회의일정을 정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집을 통지하는지 여부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이사회 개최 내역]

| 회차 | 안건 | | 가결 여부 | 정기/ 임시 | 개최 일자 | 안건통지 일자 | 출석 /정원 |
|----|----|--|----------|-----------|------------|------------|-----------|
| | 구분 | 내용 | | | | | |
| 1차 | 결의 | 제4기(2021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2022.01.26 | 2022.01.19 | 5/5 |
| | 결의 | 2022년 대규모 내부거래 변경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결의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결의 | 2022년 안전 및 보건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 | 보고 | 준법지원활동 결과 보고 | - | | | | |
| 2차 | 보고 | 2021년 4분기 경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 - | 임시 | 2022.02.23 | 2022.02.16 | 4/5 |
| | 결의 | 제4기(2021년) 재무제표 변경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결의 | 제4기(2021년) 정기주주총회 소집 일시, 장소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의 건 | 가결 | | | | |
| | 보고 |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2021년) | - | | | | |
| 3차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 | 임시 | 2022.03.19 | 2022.03.17 | 6/6 |
| | 결의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 | |
| | 결의 |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 가결 | | | | |

[2022년 이사회 개최 내역]

| 회차 | 안건 | | 가결 여부 | 정기/ 임시 | 개최 일자 | 안건통지 일자 | 출석 /정원 |
|----|----|-------------------------------|----------|-----------|------------|------------|-----------|
| | 구분 | 내용 | | | | | |
| | 결의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 | | |
| | 결의 | 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 | | |
| 4차 | 결의 | 2022년 2~4분기 대규모 내부거래 변경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2022.04.29 | 2022.04.22 | 6/6 |
| | 결의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보고 | 2022년 1분기 주요 경영활동 및 재무제표 보고 | - | | | | |
| | 보고 | 2022년 1분기 경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 - | | | | |
| 5차 | 결의 | 특수관계인에 대한 담보제공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2022.07.29 | 2022.07.22 | 6/6 |
| | 보고 | 2022년 2분기 주요 경영활동 및 재무제표 보고 | - | | | | |
| | 보고 | 2022년 상반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 | 보고 | 2022년 상반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 - | | | | |
| | 보고 | 2022년 2분기 경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 - | | | | |
| 6차 | 결의 |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2022.10.27 | 2022.10.22 | 6/6 |
| | 결의 |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보고 | 2022년 3분기 주요 경영활동 및 재무제표 보고 | - | | | | |
| | 보고 | 2022년 3분기 경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 - | | | | |

[2023년 이사회 개최 내역]

| 회차 | 안건 | | 가결 여부 | 정기/ 임시 | 개최 일자 | 안건통지 일자 | 출석 /정원 |
|----|----|--|----------|-----------|------------|------------|-----------|
| | 구분 | 내용 | | | | | |
| 1차 | 결의 | 제5기(2022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2023.01.31 | 2023.01.24 | 6/6 |
| | 결의 | 2023년 안전 및 보건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 | 보고 | 준법지원활동 결과 보고 | - | | | | |
| | 보고 | 2022년 4분기 경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 - | | | | |
| 2차 | 결의 | 제5기(2022년) 재무제표 변경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2023.02.23 | 2023.02.16 | 5/6 |
| | 결의 | 제5기(2022년) 정기주주총회 소집 일시, 장소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의 건 | 가결 | | | | |
| | 결의 |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결의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보고 |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2022년) | - | | | | |
|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 | | | | |
| 3차 | 결의 | 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임시 | 2023.03.18 | 2023.03.16 | 6/6 |
| | 결의 |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의 건 | 가결 | | | | |
| 4차 | 보고 | 2023년 1분기 주요 경영활동 및 재무제표 보고 | - | 정기 | 2023.04.28 | 2023.04.21 | 6/6 |
| | 보고 | 2023년 1분기 경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 - | | | | |

나. 이사회 정기 개최 여부 및 이사회운영규정 마련 여부

상기와 같이 당사는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고, 긴급사안 발생 시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관련 법 개정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현재와 같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프로세스와 내규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원칙 7-②)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의사록 작성·보존 여부

당사는 정관 제33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4조에 의거 매 이사회 종료 후 각 안건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의사록을 작성하며, 동 의사록에는 이사회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사내 보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들 간 자유로운 토론의 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하여 녹취록은 별도로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내역 및 안건 찬성률

이사회 결의는 당사 정관 제32조 제1항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9조 제1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집니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사업보고서를 통해 개별 이사별 이사회 참석 여부와 각 안건에 대한 결의사항(찬성/반대)을 공시하여 이사회의 활성화와 함께 책임 있는 의결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별 주요 토의 내용은 찬반의 의사결정으로 갈음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 및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총 6회,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총 4회 개최되었으며, 동 기간 동안 총 43건의 안건(승인 23건, 보고 20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내역 및 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1~12월 개별 이사의 출석 내역]

| 구분 | 회차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비고 |
|----|------|------------|------------|------------|------------|------------|------------|----------|
| | 개최일자 | 2022.01.26 | 2022.02.23 | 2022.03.19 | 2022.04.29 | 2022.07.29 | 2022.10.27 | |
| 사내 | 조현준 | 미해당 | 미해당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1,2차 미선임 |
| | 김치형 | 미해당 | 미해당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1,2차 미선임 |
| | 김문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김용섭 | 출석 | 불참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3~6차 사임 |
| 사외 | 오병희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조인강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최병덕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2023년 1~5월 개별 이사의 출석 내역]

| 구분 | 회차 | 1차 | 2차 | 3차 | 4차 | 비고 |
|----|------|------------|------------|------------|------------|----------|
| | 개최일자 | 2023.01.31 | 2023.02.23 | 2023.03.18 | 2023.04.28 | |
| 사내 | 조현준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김치형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배인한 | 미해당 | 미해당 | 출석 | 출석 | 1,2차 미선임 |
| | 김문선 | 출석 | 불참 | 미해당 | 미해당 | 3,4차 사임 |
| 사외 | 오병희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조인강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최병덕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성명 | 구분 | 이사회 재직 기간 | 출석률(%) | | | | 찬성률(%) | | |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2022 | 2021 | 2020 | | 2022 | 2021 | 2020 |
| 김용섭 | 사내 | 2018.06.01 ~ 2022.03.17 | 83.3 | 5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이천규 | 사내 | 2018.06.01 ~ 2021.03.18 | 100.0 | - | 100.0 | 100.0 | 100.0 | - | 100.0 | 100.0 |
| 김문선 | 사내 | 2021.03.18 ~ 2023.03.16 | 100.0 | 100.0 | 100.0 | - | 100.0 | 100.0 | 100.0 | - |
| 조현준 | 사내 | 2022.03.17 ~ 현재 | 100.0 | 100.0 | - | - | 100.0 | 100.0 | - | - |
| 김치형 | 사내 | 2022.03.17 ~ 현재 | 100.0 | 100.0 | - | - | 100.0 | 100.0 | - | - |
| 배인한 | 사내 | 2023.03.16 ~ 현재 | - | - | - | - | - | - | - | - |
| 오병희 | 사외 | 2018.06.01 ~ 현재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조인강 | 사외 | 2019.08.19 ~ 현재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최병덕 | 사외 | 2018.06.01 ~ 현재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윤의준 | 사외 | 2018.06.01 ~ 2021.10.01 | 60.0 | - | 80.0 | 100.0 | 100.0 | - | 100.0 | 100.0 |

- ※ 최근 3개 사업연도별 개최된 이사회는 2020년 총 7회, 2021년 총 6회, 2022년 총 6회입니다.
- ※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는 “-”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 사내이사 김용섭은 2022년 3월 17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으며, 사내이사 조현준과 김치형은 같은 날 개최된 제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 ※ 사내이사 이천규는 2021년 3월 18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으며, 사내이사 김문선은 같은 날 개최된 제 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사내이사 김문선은 2023년 3월 16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으며, 사내이사 배인한은 같은 날 개최된 제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상기 표에 사내이사 배인한의 최근 3개 사업연도 이사회 출석률 및 찬성률은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 사외이사 윤의준은 2021년 10월 1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으며, 상기 윤의준 사외이사의 출석률 및 찬성률은 사임일 이전인 2021년 7월 30일 이사회까지의 출석률 및 참석률입니다.
- ※ 사외이사 조인강은 2019년 8월 19일 법원의 결정으로 일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상기 조인강 사외이사의 출석률 및 찬성률은 선임일 이후인 2019년 10월 30일 이사회부터의 출석률 및 참석률입니다.

6. 이사회 내 위원회

(핵심원칙 8)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8-①)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현황 및 주요 역할, 구성 현황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의결사항 중에는 이사회 전원이 함께 검토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내용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 내 위원회가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 정관 제34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총 3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의 현황 및 주요 역할, 구성 현황에 대해서는 동 보고서의 [IV. 이사회 - 2. 이사회 구성 - (세부원칙 4-①)]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사회 내 위원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였는지 여부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3명)로 구성되어 있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중 2명(과반수 이상)이 사외이사이며, 사외이사가 대표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한편, 경영위원회의 경우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이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며,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의4에 따라 상임이사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동 위원회는 상임이사인 사내이사 2명으로 구성되며, 매분기 정기이사회에 의결사항을 보고함으로써 이사회 경영감독 기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 위원회 외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권장하는 별도의 보상(보수)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재경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향후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목적에 적합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적용 시기 및 구체적인 방법 등은 회사 내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세부원칙 8-②)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운영·권한에 관한 명문 규정 존재 여부

당사는 정관 제34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총 3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설치목적, 권한과 책임, 구성 및 자격·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운영규정,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활동 및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정관, 이사회운영규정 및 위원회별 규정에서 명문화하고 있지 않지만, 각 이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출석 및 참여 현황 등을 별도로 파악하여 분·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활동 및 성과평가에 대하여 명문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나, 적용 시기 및 구체적인 방법 등은 회사 내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1) 감사위원회

당사는 상법 제415조의2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의3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3명의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권한, 운영 현황 및 감사 보조조직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동 보고서의 [V. 감사기구 - 1.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 - (세부원칙 9-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당사는 상법 제393조의2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의2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명문화하여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운영규정에 정하여진 것 외에는 해당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자가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관계 법령 및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고려하여 당사에 적합한 후보인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당사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의2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4조에 의거 이사

회에서 선임 및 해임할 수 있고,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당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위원회를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2명의 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5조에 따라 사외이사를 대표위원으로 선임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상정될 것이 예상될 때마다 소집되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1일 전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하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상기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으로는 사외이사후보의 추천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며,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3) 경영위원회

당사는 정관 제34조 및 제37조,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의4에 따라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신규사업 및 투자에 관한 사항 등 이사회에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 제1항에서 이사회 부의가 명시된 사항과 다른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을 경영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이사회에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의4에 따라 경영위원회는 상임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현재 경영위원회는 사내이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며, 현재 경영위원회는 대표이사를 대표위원으로 선임하여 업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경영효율성 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의 실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필요시 대표위원이 소집하고, 소집함에 있어 회일을 정하고 그 1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하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경영위원회의 결의는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있으며, 상세한 경

영위원회 부의 사항에 대해서는 동 보고서의 [IV. 이사회 - 1. 이사회 기능 - (세부원칙 3-①)]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인 당사 차입금 조달 및 해외법인 차입금 지급 보증 등 금융기관과의 거래 내역을 주요 안건으로 심의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록의 작성방법은 이사회운영규정 제14조 제2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나. 위원회의 결의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당사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 제2항에서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정기이사회 시 분기별 결의사항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 각 위원회별 회의 개최 내역 및 개별이사의 출석률 현황

(1)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회의 개최 내역 및 최근 3개 사업연도별 개별이사의 출석률 현황은 동 보고서의 [V. 감사기구 - 1.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 - 세부원칙 9-②]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 개최 내역 및 최근 3개 사업연도별 개별이사의 출석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안건 | | 가결여부 |
|----|------------|-------|----|------------------------|------|
| | | | 구분 | 내용 | |
| 1차 | 2022.02.23 | 2/3 | 결의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 2차 | 2022.03.19 | 3/3 | 결의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대표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2023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안건 | | 가결여부 |
|---------|------|-------|----|----|------|
| | | | 구분 | 내용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

| 구분 | 성명 | 재직 기간 | 출석률(%) | | |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2022 | 2021 | 2020 |
| 사외 | 오병희 | 2018.06.01 ~ 현재 | 100.0 | 100.0 | - | 100.0 |
| 사외 | 최병덕 | 2018.06.01 ~ 현재 | 100.0 | 100.0 | - | 100.0 |
| 사내 | 조현준 | 2022.03.17 ~ 현재 | 100.0 | 100.0 | - | - |
| 사내 | 김용섭 | 2018.06.01 ~ 2022.03.17 | 50.0 | 0.0 | - | 100.0 |

※ 상기 재직기간은 이사 재직기간입니다.

※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는 "-"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020년, 2022년에 각 2회씩 개최되었으며, 2021년에는 동 위원회가 개최된 내역이 없어 "-"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최근 3개년 평균은 위원회가 개최된 연도 참석률의 단순 평균값을 기재하였습니다.

※ 사내이사 김용섭은 2022년 3월 17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으며, 사내이사 조현준은 같은 날 개최된 제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사내이사 조현준은 2022년 3월 19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3) 경영위원회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경영위원회의 회의 개최 내역 및 최근 3개 사업연도별 개별이사의 출석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경영위원회 개최 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안건 | | 가결 여부 |
|-----|------------|-------|------|-------------|----------|
| | | | 구분 | 내용 | |
| 1차 | 2022.01.12 | 2/2 | 결의사항 | 타법인 증권 취득 건 | 가결 |
| 2차 | 2022.01.13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3차 | 2022.01.19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4차 | 2022.01.19 | 2/2 | 결의사항 | 타법인 주식 매수 건 | 가결 |
| 5차 | 2022.01.21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6차 | 2022.02.07 | 2/2 | 결의사항 | 타법인 주식 매도 건 | 가결 |
| 7차 | 2022.02.09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 증설 건 | 가결 |
| 8차 | 2022.02.21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9차 | 2022.03.11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10차 | 2022.03.14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11차 | 2022.03.14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2022년 경영위원회 개최 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안건 | | 가결 여부 |
|-----|------------|-------|------|---------------------------|----------|
| | | | 구분 | 내용 | |
| 12차 | 2022.03.14 | 2/2 | 결의사항 | 울산공장 설비 신설 투자 건 | 가결 |
| 13차 | 2022.03.16 | 2/2 | 결의사항 | 2022년 최대주주등과의 예상거래내역 승인 건 | 가결 |
| 14차 | 2022.03.16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15차 | 2022.03.19 | 2/2 | 결의사항 | 경영위원회 대표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 16차 | 2022.04.06 | 2/2 | 결의사항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 |
| 17차 | 2022.04.06 | 2/2 | 결의사항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 |
| 18차 | 2022.04.06 | 2/2 | 결의사항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 |
| 19차 | 2022.04.08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20차 | 2022.04.08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21차 | 2022.04.08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22차 | 2022.04.08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23차 | 2022.04.25 | 2/2 | 결의사항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 |
| 24차 | 2022.04.28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25차 | 2022.04.28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26차 | 2022.05.03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27차 | 2022.05.03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 증설 건 | 가결 |
| 28차 | 2022.05.04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29차 | 2022.05.11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30차 | 2022.05.12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31차 | 2022.05.13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32차 | 2022.05.19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 증설 건 | 가결 |
| 33차 | 2022.05.19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 설립 및 출자 승인 건 | 가결 |
| 34차 | 2022.05.25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35차 | 2022.05.26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36차 | 2022.06.14 | 2/2 | 결의사항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 |
| 37차 | 2022.06.15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38차 | 2022.06.17 | 2/2 | 결의사항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 |
| 39차 | 2022.06.24 | 2/2 | 결의사항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 |
| 40차 | 2022.06.30 | 2/2 | 결의사항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 |
| 41차 | 2022.07.07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2022년 경영위원회 개최 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안건 | | 가결 여부 |
|-----|------------|-------|------|---------------------|----------|
| | | | 구분 | 내용 | |
| 42차 | 2022.07.07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43차 | 2022.07.28 | 2/2 | 결의사항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 |
| 44차 | 2022.07.28 | 2/2 | 결의사항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 |
| 45차 | 2022.07.29 | 2/2 | 결의사항 | 퇴직연금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의 건 | 가결 |
| 46차 | 2022.08.01 | 2/2 | 결의사항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 |
| 47차 | 2022.08.03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48차 | 2022.08.05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49차 | 2022.08.17 | 2/2 | 결의사항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 |
| 50차 | 2022.08.19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51차 | 2022.08.22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52차 | 2022.08.25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53차 | 2022.09.01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54차 | 2022.09.06 | 2/2 | 결의사항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 |
| 55차 | 2022.09.07 | 2/2 | 결의사항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 |
| 56차 | 2022.09.08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57차 | 2022.09.08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58차 | 2022.09.08 | 2/2 | 결의사항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 |
| 59차 | 2022.09.13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60차 | 2022.09.15 | 2/2 | 결의사항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 |
| 61차 | 2022.09.15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62차 | 2022.09.20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63차 | 2022.09.23 | 2/2 | 결의사항 | (주)세빛섬 업무 관련 건 | 가결 |
| 64차 | 2022.09.23 | 2/2 | 결의사항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 |
| 65차 | 2022.10.04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66차 | 2022.10.06 | 2/2 | 결의사항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 |
| 67차 | 2022.10.18 | 2/2 | 결의사항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 |
| 68차 | 2022.10.24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69차 | 2022.10.27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70차 | 2022.10.28 | 2/2 | 결의사항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 |
| 71차 | 2022.11.09 | 2/2 | 결의사항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 |

[2022년 경영위원회 개최 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안건 | | 가결 여부 |
|-----|------------|-------|------|-------------|-------|
| | | | 구분 | 내용 | |
| 72차 | 2022.11.11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73차 | 2022.11.15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74차 | 2022.11.18 | 2/2 | 결의사항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 |
| 75차 | 2022.12.16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76차 | 2022.12.19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77차 | 2022.12.20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78차 | 2022.12.26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2023년 경영위원회 개최 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안건 | | 가결 여부 |
|-----|------------|-------|------|---------------------------|-------|
| | | | 구분 | 내용 | |
| 1차 | 2023.01.17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2차 | 2023.01.19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3차 | 2023.01.19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4차 | 2023.02.10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5차 | 2023.02.13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 설립 건 | 가결 |
| 6차 | 2023.02.22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7차 | 2023.03.08 | 2/2 | 결의사항 | 타법인 주식 매도 건 | 가결 |
| 8차 | 2023.03.14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9차 | 2023.03.14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10차 | 2023.03.15 | 2/2 | 결의사항 | 2023년 최대주주등과의 예상거래내역 승인 건 | 가결 |
| 11차 | 2023.03.20 | 2/2 | 결의사항 | 이사보수 집행 승인 건 | 가결 |
| 12차 | 2023.03.21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13차 | 2023.03.24 | 2/2 | 결의사항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 |
| 14차 | 2023.04.07 | 2/2 | 결의사항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 |
| 15차 | 2023.04.10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16차 | 2023.04.12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 보완투자 건 | 가결 |
| 17차 | 2023.04.18 | 2/2 | 결의사항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 |
| 18차 | 2023.04.27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19차 | 2023.04.27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20차 | 2023.04.28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2023년 경영위원회 개최 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안건 | | 가결 여부 |
|-----|------------|-------|------|-------------|----------|
| | | | 구분 | 내용 | |
| 21차 | 2023.05.03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22차 | 2023.05.04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 23차 | 2023.05.04 | 2/2 | 결의사항 | 은행업무 관련 건 | 가결 |
| 24차 | 2023.05.11 | 2/2 | 결의사항 |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 가결 |

[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

| 구분 | 성명 | 재직 기간 | 출석률(%) | | |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2022 | 2021 | 2020 |
| 사내 | 김치형 | 2022.03.17 ~ 현재 | 100.0 | 100.0 | - | - |
| 사내 | 배인한 | 2023.06.16 ~ 현재 | - | - | - | - |
| 사내 | 김문선 | 2021.03.18 ~ 2023.03.16 | 100.0 | 100.0 | 100.0 | - |
| 사내 | 김용섭 | 2018.06.01 ~ 2022.03.17 | 100.0 | 100.0 | 100.0 | 100.0 |
| 사내 | 이천규 | 2018.06.01 ~ 2021.03.18 | 100.0 | - | 100.0 | 100.0 |

※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는 "-"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상기 재직 기간은 이사 재직기간입니다.

※ 사내이사 김용섭은 2022년 3월 17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으며, 사내이사 김치형은 같은 날 개최된 제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사내이사 김치형은 2022년 3월 19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경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사내이사 이천규는 2021년 3월 18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으며, 사내이사 김문선은 같은 날 개최된 제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사내이사 김문선은 2021년 3월 2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경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사내이사 김문선은 2023년 3월 16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으며, 사내이사 배인한은 같은 날 개최된 제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사내이사 배인한은 2023년 3월 18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경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상기 표에 사내이사 배인한의 최근 3개 사업연도 이사회 출석률 및 찬성률은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1.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9-①)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감사위원회 구성 전반에 관한 사항

(1) 감사위원회 구성·선임 및 회계·재무전문가 현황

당사는 관련 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상장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투명성 제고 등의 목적을 준수하기 위해 내부감사기구로 감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중입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11, 정관 제36조,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해당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총 3인의 이사로 구성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대표위원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됩니다. 현재 당사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상법 제415조의2 제2항에 명기된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 요건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더불어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제1호에 명기된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이라는 규정에 따라 상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조인강 사외이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조인강 사외이사는 1989년 경제기획원 예산실 예산정책과 사무관으로 재직하며 재무부, 국세청, 관세청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편성과 그 집행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08년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재직 당시 금융감독원 및 산하기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국장을 역임하며 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 기업회계제도 및 공인회계사 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회계기준 및 외부감사

기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한국회계기준원의 감독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11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이사회의 일원으로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에 참여 및 2014년 신용보증기금 상임감사로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의 회계 감사 업무 등을 수행한 바, 상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금융기관·정부·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에 해당하여,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의 요건을 갖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감사위원회 위원들도 법률 및 의료/행정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 최병덕 사외이사는 법무법인 동인 대표 변호사로, 과거 사법연수원장, 수원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경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수행하며 쌓은 법률 관련 전문 지식 및 윤리의식, 준법정신을 토대로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에 임하며 경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 오병희 사외이사는 인천세종병원 병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장 및 한국국제의료협회 회장 등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며 쌓은 의료/행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 통찰력을 바탕으로 충실히 감사 업무 및 경영 전반에 대한 감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31일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회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

| 구성 | |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직책 | 구분 | 성명 | | |
| 위원장 | 사외이사 | 조인강 | 1983 ~ 1995년 경제기획원 사무관 2007 ~ 2008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심의관 2008 ~ 2009년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2009 ~ 2011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2011 ~ 2013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대리이사 2014 ~ 2016년 신용보증기금 상임감사 2018 ~ 2023년 (유)드림컴홀딩스 이사 2023년 ~ 현재 (주)케이씨티시 사외이사 | 회계·재무 전문가 |
| 위원 | 사외이사 | 최병덕 | 1978년 사법시험 합격(20회), 1980년 사법연수원 수료(10기) 2010 ~ 2012년 수원지방법원장 2012 ~ 2012년 대전고등법원장 2012 ~ 2014년 사법연수원장 2014년 ~ 현재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 | - |
| 위원 | 사외이사 | 오병희 | 2010 ~ 2018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순환기내과 교수 2013 ~ 2016년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장 2014 ~ 2016년 한국국제의료협회 회장, 대한심장학회 이사장 2016 ~ 2017년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회장 2018년 ~ 현재 인천세종병원 병원장 | - |

(2)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정책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당사 정관 제36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의3에 명기된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요건을 상회하여 위원 전부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에 관한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5조에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여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감사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전문성 있는 감사위원회 위원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0조에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하여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규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업무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 및 시행하여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감사위원회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요청하거나 필요할 경우 당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통해 감사위원회 위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수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나. 감사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 및 그 내용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등을 규율하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을 2018년 6월 1일 제정하였습니다. 동 규정의 목적은 감사위원회가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정관 제36조에 따라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외에도 관련 법령, 정관 또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구체적인 권한은 동 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5.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6. 이사의 보고 수령
7.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8.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9.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10.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감사위원회의 주요 심의·의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승인 사항 |
|-------------------------------------|---|
| 정관 또는 이사회운영규정상의 감사위원회 결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의 회계와 업무감사에 관한 사항 -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에 관한 사항 -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 정관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
|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상의 감사위원회 결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감사에 관한 사항 |

(2) 감사위원회의 권한 및 정보 접근성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6조 제3항에 감사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 감사위원회가 업무집행 시 경영진 행위의 적법성 등을 감사하고,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검토, 감사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없도록 최대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감사위원회에 전속되는 감사부설기구를 설치할 것을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8조 제1항에 명시하였고, 동 규정 제18조 제4항에 따라 대표이사·이사와 경영진은 감사위원회가 감사부설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회의 개최 이전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안건 정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 방문하여 회사의 경영현황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상정된 의안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실무지침의 취지 및 요건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이 필요한 경우 이사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6조 제2항에 명문화하였고, 그 외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동 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직무 수행을 위한 회사 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므로 기업 정보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접근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감사위원회 교육 및 외부전문가 자문 지원

당사는 신규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해 회사의 사업구조, 경영실적 및 감사위원회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등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있어 조기 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회사 주체의 방문설명을 통해 2022년 1월 방문설명을 통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안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 2월에는 상법 개정에 따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인 분리 선출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4월, 7월과 10월에 상법 및 공정거래법에 대한 안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 작성 및 해석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외부전문가인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자문 지원을 받고 있으며, 당사는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감사위원회 개최 전 방문설명 시 회사의 경영 현황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과 함께 의안과 관련된 법령(상법, 공정거래법, 외감법 등) 및 규정,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실무지침의 취지 및 요건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개정 사항이 있을 시 추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위원회가 수시로 감사업무수행이 필요한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교육 내용에 따라 적합한 내·외부 전문가를 통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4)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 현황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전속되는 감사부설기구(감사지원팀)를 2018년 6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및 당사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설기구의 내부감사 인력은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며 지휘·명령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지원팀은 감사위원회 직속 조직으로 감사위원회가 책임자 임명에 대한 동의권 및 평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 회사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그 구성원은 회계업무 경력자로 구성되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지원팀은 분기마다 감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감사 및 검토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31일 현재 당사의 감사부설기구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부설기구 현황]

| 부서명 | 직원수 | 직위 | 평균 근속연수 | 비고 |
|-------|-----|---------------------|---------|----|
| 감사지원팀 | 1명 | Performance Manager | 1년 | - |

다.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상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상이 개별 실적에 근거한 평가 결과로 지급될 경우 사외이사 활동의 독립성·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감사위원의 독립성 유지 차원에서 별도의 평가와 연동하지 않고 직무 수행의 책임과 역할 등만을 감안하여 자체 보상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보상 항목은 기본 급여로 한정하고 있으며 기본 급여 외에 성과급 및 주식 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별도 보수는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전원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가 없으나, 자체 보상정책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대한 별도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사외이사과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에게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지급되었던 감사위원회 소속 사외이사의 보수 현황 및 기타 사외이사 보수와의 비교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보수 지급 금액]

| 구분 | 인원수 | 보수 총액 | 1인당 평균 보수액 | 비고 |
|--------------------|-----|--------|------------|----|
| 감사위원회 위원 | 3 | 162백만원 | 54백만원 |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 | - |

※ 상기 인원수는 2022년말 기준입니다.

※ 상기 1인당 평균 보수액은 감사위원 1인에게 실제 지급한 연간 보수금액으로, 당사는 모든 감사위원 및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에게 동일한 금액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여부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회사 내부 실정에 적합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및 경영환경의 변화, 관련 법규 변경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회사 전반에 걸쳐 투명한 경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세부원칙 9-②)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가. 감사위원회의 정기적 회의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위하여 재무제표 등 회계 관련서류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 절차 및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대해 회계 관련 장부와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분석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평가·보고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이를 보고 받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검토합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27조에서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반기말 이후 및 정기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연 2회 대면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동 규정 제28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을 감시 및 평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권고·요청하기 위해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평가의견을 이사회에 제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2022년도 사업보고서 제출 시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함께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업무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로부터 경영위원회의 심의내용과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고 중요한 업무에 관한 당사의 보고에 대해 추가검토 및 자료보완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상기의 일상 감사 및 절차를 기초로 상법 제447조의4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당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회의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2조에 따라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되고 정기위원회는 매분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늦어도 1일 전에 이를 각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감사위원회 위원은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7조에 따라 매 감사위원회 종료 후 각 안건별 감사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의사록을 작성하며, 동 의사록에는 감사위원회 안건, 경과 요령,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회 위원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사내 보존하고 감사위원회는 동 의사록의 사본을 7일 내에 각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송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39조에 따라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각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동 규정 제41조에 근거하여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진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문이 있을 경우 직무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7회, 202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4회 개최되었으며, 동 기간 동안 총 27건의 안건(승인 11건, 보고 16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 2월 23일, 2023년 2월 23일에 각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감사위원회 위원들의 평균 출석률은 100%이며 구체적인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및 최근 3개 사업연도별 개별이사의 출석률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2022년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안건 | | 가결 여부 |
|----|------------|-------|------|-----------------------------|-------|
| | | | 구분 | 내용 | |
| 1차 | 2022.01.26 | 3/3 | 결의사항 | 감사위원회 부설기구 책임자 변경의 건 | 가결 |
| | | | 보고사항 | 2021년 4분기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 - |
| | | |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평가, 운영실태 보고 | - |
| | | | 보고사항 |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업무용역 체결현황 | - |
| 2차 | 2022.02.23 | 3/3 | 결의사항 | 제4기(2021년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감사 | 가결 |
| | | | 결의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가결 |
| | | | 결의사항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제출 | 가결 |
| 3차 | 2022.03.19 | 3/3 | 결의사항 | 감사위원회 대표감사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 4차 | 2022.04.29 | 3/3 | 보고사항 | 2022년 1분기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 - |
| | | | 보고사항 | 2022년 감사위원회 운영계획 | - |

[2022년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 정원 | 안건 | | 가결 여부 |
|----|------------|-----------|------|-----------------------------|----------|
| | | | 구분 | 내용 | |
| | | | 보고사항 |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업무용역 체결현황 | - |
| 5차 | 2022.07.29 | 3/3 | 보고사항 | 2022년 2분기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 - |
| | | |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보고사항 |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업무용역계약 체결 현황 | - |
| 6차 | 2022.10.27 | 3/3 | 보고사항 | 2022년 3분기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 - |
| | | | 보고사항 |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업무용역계약 체결 현황 | - |
| 7차 | 2022.12.15 | 3/3 | 결의사항 | 외부감사인 선임(2023~2025년)의 건 | 가결 |
| | | | 결의사항 |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업무 용역계약 사전 승인의 건 | 가결 |

[2023년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 정원 | 안건 | | 가결 여부 |
|----|------------|-----------|------|-----------------------------|----------|
| | | | 구분 | 내용 | |
| 1차 | 2023.01.31 | 3/3 | 보고사항 | 2022년 4분기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 - |
| | | |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평가, 운영실태 보고 | - |
| 2차 | 2023.02.23 | 3/3 | 결의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가결 |
| 3차 | 2023.02.23 | 3/3 | 결의사항 | 제5기(2022년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감사 | 가결 |
| | | | 결의사항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제출 | 가결 |
| 4차 | 2023.04.28 | 3/3 | 보고사항 | 2023년 1분기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 - |
| | | | 보고사항 | 2023년 감사위원회 운영계획 | - |
| | | | 보고사항 |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업무용역 체결현황 | - |
| | | | 결의사항 | 감사위원회 부설기구 책임자 변경의 건 | 가결 |

(2) 개별 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 내역

[2022년 개별 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 내역]

| 구분 | 회차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비고 |
|----|------|------------|------------|------------|------------|------------|------------|------------|----|
| | 개최일자 | 2022.01.26 | 2022.02.23 | 2022.03.19 | 2022.04.29 | 2022.07.29 | 2022.10.27 | 2022.12.15 | |
| 사외 | 조인강 | 출석 | - |
| 사외 | 최병덕 | 출석 | - |
| 사외 | 오병희 | 출석 | - |

[2023년 개별 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 내역]

| 구분 | 회차 | 1차 | 2차 | 3차 | 4차 | 비고 |
|----|------|------------|------------|------------|------------|----|
| | 개최일자 | 2023.01.31 | 2023.02.23 | 2023.02.23 | 2023.04.28 | |
| 사외 | 조인강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사외 | 최병덕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사외 | 오병희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3) 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 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률

[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 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성명 | 재직 기간 | 출석률(%) | | |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2022 | 2021 | 2020 |
| 사외 | 조인강 | 2019.08.16 ~ 현재 | 100.0 | 100.0 | 100.0 | 100.0 |
| 사외 | 최병덕 | 2018.06.01 ~ 현재 | 100.0 | 100.0 | 100.0 | 100.0 |
| 사외 | 오병희 | 2021.10.26 ~ 현재 | 100.0 | 100.0 | 100.0 | - |
| 사외 | 윤의준 | 2018.06.01 ~ 2021.10.01 | 90.0 | - | 80.0 | 100.0 |

※ 감사위원 윤의준은 2021년 10월 1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으며, 상기 윤의준 감사위원의 출석률은 사임일 이전인 2021년 7월 30일 감사위원회까지의 출석률입니다.

※ 감사위원 오병희는 2021년 10월 26일 법원의 결정으로 일시 감사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상기 오병희 감사위원의 출석률은 선임일 이후인 2021년 10월 29일 감사위원회 출석률입니다.

나. 감사위원회의 성실한 업무수행 여부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2조에 의거 최소 분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 및 필요시 수시로 개최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의 평균 출석률은 90% 이상을 기록하며 감사 관련 업무 등을 매우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각 감사위원회 위원이 안건 심의 및 승인에 있어 최선의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매 위원회 개최일 최대 7일 전에 각 안건에 대한 사전 보고와 질의 응답을 대면 실시하고, 이들의 추가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개최일 전까지 상세히 지원하여 감사위원회 안건 심의의 내실화를 기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더욱 전문적인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내·외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활동 내역 및 기타 특이사항 등은 모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분·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2. 외부감사인

(핵심원칙 10) 외부감사인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10-①)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가. 외부감사인 선임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제10조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며,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립·운영하여 감사위원회가 당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어 별도의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회사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선정 시, 각 회계법인에 감사제안 요청서를 발송 후 대면 회의 개최를 통해 계약조건(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 독립성, 전문성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선정 및 감사계약을 체결하며, 선정된 외부감사인과 세부 감사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는 등 일련의 그 과정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8년 6월 1일 (주)효성으로부터 인적분할하여 신설된 당사는 분할 전 (주)효성이 2017년 7월 19일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후 의결사항으로 외부감사인 지정 2년(2018.01.01 ~ 2019.12.31)을 조치 받았기 때문에 분할회사인 당사 또한 2019년 사업연도까지 지정감사인(삼덕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2022년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선정과 관련하여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19년 12월 20일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한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제안서를 제출한 회계법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평가하여 삼일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2025년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선정과 관련하여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22년 12월 15일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한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제안서를 제출한 회계법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평가하였습니다. 복수의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업무에 대한 제안서를 수령한 후 감사업무 수행팀 역량, 회계법인 역량, 감사수행절차의 적정성, 제안 보수의 적정성 등 여러 항목에 대해 각 항목별 감사위원회가

판단하기에 합리적인 배점을 분배하여 종합적으로 면밀하고 심도 있는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사가 외부감사인 후보를 평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비고 | |
|------|-------------|--|---|
| 감사품질 | 감사업무수행팀의 역량 | - 감사담당자의 경험 - 감사담당자의 산업전문성 - 징계 여부 | - |
| | 회계법인의 역량 | - 내부품질관리 - 독립성 및 법규준수 - 과거 수행업무의 적정성 | - |
| | 감사수행절차의 적정성 | - 투입인력 및 투입시간의 적정성 - 파트너 및 매니저의 업무관여도 - 위험분야에 대한 감사계획 - 전문가 활용 - 감사위원회(감사)와 커뮤니케이션 | - |
| 가격입찰 | 제안 보수의 적정성 | - | |

상기 세분화된 평가기준을 통해 회계법인에 대한 평가를 면밀히 진행한 결과 당사 및 계열회사의 결산 일정에 따른 감사 일정의 구체성, 감사 참여 인원 구성의 적정성 등 감사수행전략 부분과 당사의 자산규모 및 회계처리 프로세스의 복잡성을 고려한 보수의 적정성 부분 등에서 삼일회계법인이 타사 대비 높은 평가를 받아 당사의 2023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기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과거 (주)효성에 대한 감사업무 경험이 풍부하여 당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업계 최고 수준의 감사품질을 유지하는 삼일회계법인에 회계감사업무를 의뢰하여 급변하는 회계 및 감사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재무정보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정 후 감사 계약을 체결한 날(2023년 2월 14일)부터 2주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의 선임 사실을 보고하였고, 동 기간 내 회사 홈페이지에도 선임사실을 공고(2023년 2월 23일)하여 주주에 대한 보고 또한 완료하였으며 해당 공고 내용은 최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게시될 예정입니다. 당사와의 감사 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삼일회계법인은 회사의 2020년도~2022년도 1분기 검토, 2분기 검토, 3분기 검토 및 2020년~2022년 감사를 수행하였으며,

감사 결과 당사의 2020년도~2022년도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감사 및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삼일회계법인은 회사의 2023년도 1분기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분기재무제표 및 분기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결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당사는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법률 하에 지정 선임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 종료 후의 감사수행 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수시로 서면 및 대면 미팅을 진행하여 충분한 감사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지, 연간 감사 수행 절차를 계획대로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 수행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감사품질 전반에 대하여 당사가 인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당사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동 기간 동안 외부감사인의 자회사를 통해 경영자문 및 비감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현황]

| 감사인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삼일회계법인 | 2022년 3월 | 2021년 세무조정 | 2022.03 | 16백만원 | - |
| 삼일회계법인 | 2022년 3월 | 터키법인 이전가격 용역 | 2022.03 ~ 이전가격 타결시 | 75천TRY | - |
| 삼일회계법인 | 2022년 3월 | 홍콩법인 회계자문 용역 | 2022.03 ~ 2023.03 | 18천HKD | - |
| 삼일회계법인 | 2022년 4월 | 본사 이전가격 용역 | 2022.04 ~ 이전가격 타결시 | 15백만원 | - |
| 삼일회계법인 | 2022년 4월 | 밀라노법인 이전가격 용역 | 2022.04 ~ 이전가격 타결시 | 25천EUR | - |
| 삼일회계법인 | 2022년 4월 | 멕시코법인 회계자문 용역 | 2022.04 ~ 업무종료시 | 2천USD | - |
| 삼일회계법인 | 2022년 4월 | 홍콩법인 이전가격 용역 | 2022.04 ~ 이전가격 타결시 | 25천HKD | - |
| 삼일회계법인 | 2022년 5월 | 동나이법인 모터사업부 매각자문 | 2022.05 ~ 이전가격 타결시 | 880백만VND | - |
| 삼일회계법인 | 2022년 9월 | 동나이 기전법인 업무지원 용역 | 2022.09 ~ 이전가격 타결시 | 130백만VND | - |
| 삼일회계법인 | 2022년 9월 | 동나이 NY 법인 업무지원 용역 | 2022.09 ~ 이전가격 타결시 | 87.5백만VND | - |
| 삼일회계법인 | 2023년 1월 | 동나이법인 AUP→복구총당부채 검토 | 2023년 1월 | 46백만VND | - |

| | | | | | |
|--------|----------|------------|----------|-------|---|
| 삼일회계법인 | 2023년 3월 | 2022년 세무조정 | 2023년 3월 | 16백만원 | - |
|--------|----------|------------|----------|-------|---|

나.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마련 여부

상기 내용으로 볼 때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고, 내부 실정에 맞는 명문화된 규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외부감사인 선임 정책을 마련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수시로 평가 및 점검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수행 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평가 및 기준 등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단, 적용 시기 및 구체적인 방법 등은 회사 내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세부원칙 10-②)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 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현황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35조 제1항~제3항에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책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의거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를 활용하여 자체 업무에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대면회의 및 서면회의를 열어 독립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동 회의에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해 긴밀하고 신속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의 결과는 유관부서간 논의를 통해 내부감사업무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간 회의 개최 내역 및 주요 논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과의 회의 현황]

| 개최 일자 | 외부감사인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비고 |
|------------|--------|------|--|----|
| 2022.01.26 | 삼일회계법인 | 대면회의 | 2021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평가 보고 등 | - |
| 2022.03.07 | 삼일회계법인 | 서면회의 | 2021년 기말감사 보고, 핵심감사사항 등 | - |
| 2022.04.29 | 삼일회계법인 | 대면회의 | 2022년 감사계획 및 주요감사사항, 일정 협의 등 | - |

| | | | | |
|------------|--------|------|--|---|
| 2022.07.29 | 삼일회계법인 | 대면회의 | 2022년 통합감사 수행계획 등 | - |
| 2022.12.15 | 삼일회계법인 | 서면회의 | 2022년 핵심감사사항 및 주요 검토사항 등 | - |
| 2023.01.31 | 삼일회계법인 | 대면회의 | 2022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평가 보고 등 | - |
| 2023.03.07 | 삼일회계법인 | 서면회의 | 2022년 기말감사 보고, 핵심감사사항 등 | - |
| 2023.04.28 | 삼일회계법인 | 대면회의 | 2023년 통합감사 수행계획 등 | - |

또한,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35조 제4항~제6항에서 외부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항,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 역시 동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할 경우 해당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내역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는 2018년 6월 1일을 분할기일로 설립된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정기주주총회를 총 5회 개최하였으며, 주권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제4항을 준수하기 위해 감사전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6주 전,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 전에 각각 외부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감사전 재무제표 및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전 (연결)재무제표 제출 현황]

| 사업연도 | 제출자료 | 기간 내 제출여부 | 외부감사인명 | 제출시기 |
|------|---------------|--------------|--------|------------|
| 2021 | 감사전 재무제표 | 제출(주총 6 주 전) | 삼일회계법인 | 2022.01.28 |
| 2021 |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 | 제출(주총 4 주 전) | 삼일회계법인 | 2022.02.16 |
| 2022 | 감사전 재무제표 | 제출(주총 6 주 전) | 삼일회계법인 | 2023.02.01 |
| 2022 |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 | 제출(주총 4 주 전) | 삼일회계법인 | 2023.02.15 |

나.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주기적 의사소통 여부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긴밀한 관계 유지 및 주기적이고 충분한 의사소통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이를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내 명문화하여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당사 경영진의 참석없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간의 대면회의 개최 및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전문적이고 투명한 감사업무 진행을 위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연계 활동 등이 더욱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적 책임 및 공헌 활동

효성그룹은 '나눔으로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교육과 나눔을 통해 수혜자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기업'의 비전을 바탕으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의 3대 과제인 취약 계층 지원, 문화예술후원, 호국보훈을 중심으로 효성이 펼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은 한국에만 머물지 않고 지구촌 곳곳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취약 계층 지원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다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겠다는 가치의 실천으로, 무엇보다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당사는 2013년부터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효성나눔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어린이 재활치료 및 장애어린이가족 후원, 취약 계층 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일자리창출 사회적 기업 후원사업(생산설비 교체, Com-bridge 사업 등), 굿윌스토어 운영을 통한 장애/저소득층 일자리창출 및 리사이클링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인근 저소득층 대상 사랑의 쌀/김장김치 활동부터 마을재생활동, 마포구 저소득층 희망나눔 페스티벌 후원, SNS와 연계한 인근 지역 생필품 지원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솔선수범을 통해 함께 잘사는 세상,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9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효성의 사회공헌은 국경을 뛰어 넘습니다. 베트남에서 매년 1천여 명 이상의 주민을 치료하는 해외의료봉사단 파견, 고위험환자 한국 초청 수술, 재난지역 긴급 구호 활동, 저소득국가 미니도서관 설립, 저개발지역 학교 컴퓨터 기증 등을 통해 글로벌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되고자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문화 예술 후원

당사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후원 활동은 소외 계층이 예술을 누릴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직접 예술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임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창덕궁 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한일문화 대축제 및 요요마&실크로드 앙상블 공연 후원 및, 폭력예방 뮤지컬 후원, 우수 연극단체 후원, 장애 예술가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호국 보훈

당사는 사회공헌 분야 중에서도 특히 국가를 위한 활동을 폭넓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흥제 선대회장의 산업보국 창업 정신을 계승한 것으로 효성그룹의 최고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순국 선열을 기리기 위해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묘역 정화, 현충탑 참배 등의 활동을 펼치는 것도 이와 같은 창업 정신 계승의 일환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5년 8월에는 북한의 DMZ 지뢰 매설 도발로 전상을 입은 장병들을 위로하고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평화의 발' 동상 제작을 후원하였으며, 육군 1군단 광개토부대와 자매결연을 통해 매년 군부대 발전을 위한 위문금은 물론 '사랑의 독서 카페'에 책을 기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전용사의 주거 지원을 위한 나라사랑보금자리 프로젝트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회적 책임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경영가능보고서 발간을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공개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국문/영문으로 당사 웹사이트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hyosungtn.com/kr/csr/sustainability_report.do)

(별첨 1)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 구분 | 핵심 지표 | 공시대상기간 준수여부 | | 준수여부 표기에 대한 상세 설명 | 직전 공시대상기간 준수여부 | | 비고 |
|------|---|-------------|---|---|----------------|---|----|
| | | ○ | X | | ○ | X | |
| 주주 |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 | V | • 주주총회 21일 전 소집공고 실시 | | V | - |
| | ② 전자투표 실시 * | | V | • 전자투표 미도입 | | V | - |
| |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 V | | • 2023.03.16일 주주총회 개최 * 주총집중일(3월 24, 30, 31일) | V | | - |
| |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 | V | • 배당실시 계획 연 1회 통지, 배당정책 미통지 | | V | - |
| 이사회 |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 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 | V | • 명문화된 승계정책 無 • 임원 및 임원 후보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관 제29조 유고시 승계절차 마련.운영 | | V | - |
| |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V | | •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관련 정책 마련.운영 | V | | - |
| |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 | V | •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미분리 | | V | - |
| | ⑧ 집중투표제 채택 | | V | • 정관에서 집중투표제 배제함 | | V | - |
| |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 V | •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중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임원 존재 | | V | - |
| |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 V | | • 사외이사 3인 중 2인 재직기간 5년, 1인 재직기간 3년 10개월 | V | | - |
| 감사기구 |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 | V | | • 2022년 1월, 2월, 4월, 7월, 10월 교육 실시 | V | | - |
| |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V | | • 감사지원팀 설치.운영 중 | V | | - |
| |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V | | • 대표감사위원 1인 충족 (상법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 | V | | - |
| |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 V | • 2022년 분기별 1회 이상 회의개최(1월, 3월, 4월, 7월, 12월) 단, 3월, 12월은 서면방식 진행 | V | | - |
| |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 V | | • 감사위원회직무규정상 중요회의 출석 및 자료 열람, 조사 등 근거규정 有 | V | | - |

※ 작성기준 시점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2023.05.31)입니다.

단, * 항목은 보고서 제출일 직전 정기주주총회(2023.03.16) 기준이며,

** 항목은 공시대상기간(2022.01.01 ~ 2022.12.31)내 해당 내용 이행 여부 기준입니다.

(별첨 2) 관련 내부 규정

당사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부 규정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 ① 정관
- ② 이사회운영규정
- ③ 감사위원회직무규정
- ④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 ⑤ 준법통제기준
- ⑥ 공시정보관리규정
- ⑦ 내부회계관리규정
- ⑧ 보안규정
- ⑨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규정